

(2003년 이전)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백서]

제2권 - 활동자료(1)

(2003년 이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앤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백서]

제2권 - 활동자료(1)

(2003년 이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앰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시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2권 목차

■ 2002년 이전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박찬운, 2002.11.16.

□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호소문, 조석영, 2002.12.

■ 2003년

□ 청송감호소 피감호인에게 보내는 편지,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2.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3.10.

□ ‘문명국가의 수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03.3.11.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03.3.11.

□ 현황, 치료감호소, 2003.3.13.

□ 질의서(현법재판소 하경철 재판관 수신), 조석영, 2003.3.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송2보호감호소 방문 보고, 2003.3.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 협조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9.

□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안(초안), 공대위 사무국/열린회의 워크샵팀, 2003.4.10.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에 대한 협조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10.

□ 사회보호법 TFT 제3차 모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003.4.11.

□ 진정에 대한 회신(1035 양대길 수신), 법무부, 2003.4.14.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진행상황, 미상, 2003.4.14.

□ 위임장 등 작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청송제2보호감호소, 2003.4.16.

□ [자료집]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첫 번째>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29.

□ 헌법소원제기 및 감호소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 이상희, 2003.5.2.

□ 진정에 대한 회신(권보상 수신), 법무부, 2003.5.7.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 참석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15.

□ 청송제2보호감호소 고충처리반, 2003.5.16.

□ 현황, 치료감호소, 2003.5.16.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초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1.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판지, 이호중, 2003.5.22.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5.23.
- 그대는 보이는가, 그대는 들리는가, 반인권의 상징, 청송의 실태 그리고 저 처절한 외침을,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5.24.
- [보도자료] 청송 2감호소 단식농성 4일째-출소자 1인 청와대 앞 시위 돌입-공대위 청송단식농성 유감 성명발표, 2003.5.26.
- 청구이유 보충서(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귀중), 이상희, 2003.5.27.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집회 개최 및 법무부 항의방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8.
- [공문] 청송 제2 보호감호소 단식농성과 관련 면담 신청(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9.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법무부 “보호감호 혁신 방안” 발표, 법무부, 2003.5.29.
- 법무부 개선안을 비판한다, 피보호감호자 대표단 일동, 2003.5.30.
- 법무부의 ‘보호감호 혁신 방안’에 대한 반박 성명서: 참여정부는 보호감호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청송의 문을 열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30.
- [보도자료] 성명서-청송보호감호소 단식투쟁,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 2003.5.31.
- 진정서(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귀중), 조석영, 2003.5.
- 보호감호행정 혁신방안 검토(안), 법무부, 2003.5.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에 대한 공대위 기자회견 및 출소자 증언대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2.
- 소장(‘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율 및 죄명별 분류’에 관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유해정/법무법인 한결, 2003.6.3.
- [소책자]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2003.6.13.
- [보도자료] 청송 피보호감호자 616명 헌법소원 제기 및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7.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2003.6.18.
- 헌법소원 질의서 분석결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
- [공문] 법무부 보호감호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질의서(법무부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9.
- [공문] 사회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협조 요청(민변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9.
- 정보공개청구서(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송제1감호소 및 청송 제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전과비율), 유해정, 2003.6.19.
- [공문] “사회보호법은 왜 반인권 악법인가?” -지역단체 활동가 및 시민 간담회 개최 요망,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24.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6.
- 보호감호제도를 위한 변명,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6.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2003.6.
- [자료집]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7.1.
- [공문]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동대책위원회 수신), 법무부, 2003.7.5.
-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7.5.
- 제1차 사회보호법폐지추진소위원회, 대한변협, 2003.7.14.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 2003.7.29.
- 중재신청이유(언론중재위원회 수신),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7.
- 준비서면(언론중재위원회 수신),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7.
- 헌법재판소의 청송감호소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28개 인권단체 의견서, 2003.8.6.
-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법무부 장관 및 정책위원회 위원, 정책기획단 수신), 26개 민간단체, 2003.8.21.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8.26.
- 편지(강금실 법무부장관 수신),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8.27.
- 사회보호법폐지 법안 발의 환영 논평,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
- [보도자료] 사회보호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운영실태 직접 점검키 위해 청송보호감호소 방문, 법무부, 2003.9.4.
- 치료감호와 인권-그동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정하, 2003.9.15.
- <보호감호제 운영개선이라는 법무부 입장에 부쳐> 보호감호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6.
- 제3차 사회보호법폐지추진소위원회, 대한변협, 2003.9.17.
- <기자회견문> 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2003.9.17.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7.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동참의견(대한변호사 협회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2003.9.19.

- 보호감호가출소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계획 보고, 법무부, 2003.9.20.
- 편지(22일 감호소 가출소자 상경 기자회견 경과보고 등), 조석영, 2003.9.24.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법무부 앞 1인시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24.
- [보도자료] 청송 피보호감호자 단식농성 돌입 보도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29.
- 청송보호감호소 실태조사 방문, 대한변호사협회 법무과, 2003.9.29.
- 업무현황, 청송제1·2보호감호소, 2003.9.29.
- 청송보호감호소의 단식 3일째를 맞아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 517인 선언,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들, 2003.10.1.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단식 10일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국회앞 시위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8.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위하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13.
- 심신장애자 등에 관한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
- [보도자료] 치료감호제도 관련 의크샵 보도요청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10.
- [자료집]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워크샵,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11.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출소자 사회정착의 건(최용규 의원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24.
- [보도자료]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2.5.
- 법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폭력?-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봄야할 때, 정범구 의원, 2003.
- 법무부정책위원회 관련, 2003.
- 근로일과표, 2003.
- 자비부담물품 종류 및 가격표, 2003.
- 자비부담의약품 허가품목 내역서, 2003.
- 피보호 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3.

2002년 이전

수신: 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16.

참조: 인권정책국 법제개선실

제목: 사회보호법위헌여부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발신: 변호사 박찬운

귀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회보호법위헌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회보호법 혹은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종래의 논의

종래 사회보호법 혹은 동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처벌의 논란

누범전과자들에게 형을 선고하는 외에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하고 형집행 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직업훈련과 강제노동을 과하도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그 집행 방법이나 집행내용, 집행효과 등이 모두 형법상의 정역형과 차이가 없어 명칭만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형법과 동일하 내포을 가진 신체자유의 제한이므로 이 제도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사실을 다시 거론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3조1항에서 보장하는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수회의 결정(대표적인 결정으로는 1991.

4.1 선고 89헌마17,85.1 및 1996. 11. 28 선고 95헌바20 3 등이 있음)을 통해 감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하여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적법절차위반의 논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감호의 성질에 비추어서 당연히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감호의 집행을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보호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판단시기 설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1항이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 등에서 피보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은 결국 법원에 의한 사후의 예측판단작용인 이상 절차상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그 예측 판단의 시점이 피고사건의 심리종결시점으로 된다하여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집행실태에서 본 위헌적인 제도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개선을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호감호시설이나 집행방법의 현실을 보면 교육개선은커녕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를 볼 때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위헌적인 계속적 자유박탈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이 주장은 제도의 현실을 위헌으로 보고 따라서 제도 자체도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 등에서 보호감호집행의 현실적으로 열악하여 이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감호집행의 현실적인 여건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호감호제도 그 자체가 바로 위헌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본인의 의견: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본인은 현재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는 위에서 정리한 위헌성의 논거대로 위헌적인 제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루 빨리 폐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가능성도 많지 않으며 다시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넘긴다고 하여도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보호법 혹은 동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많은 수용자들의 기본권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본인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판단의 현실적 어려움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한결같이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의 현실은 문제가 있지만 사회보호법 혹은 동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안처분에 대한 찬반양론(이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는 것임)에서 찬성론 쪽에 서 있다는 이야기로 이것 자체는 지극히 가치론적인 입장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반대론으로 바뀌지 않는 한 보호감호제도의 위헌판단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들의 입장은 비록 반대론의 입장에서 보면 위헌적인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결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가치관의 일대 양보가 없는 한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판단은 당분간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호감호제도의 집행방법의 위헌성

사회보호법 혹은 동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말이 났고 가까운 장래에 그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보호감호제도의 집행방법(현실)이 비인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보호감호제도의 원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감호제도(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의 문제와는 별도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현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호법이나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도 감호처분의 내용 하나 하나를 분석하여 위헌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이미 위에서 부 1991년 4월 1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변정수 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3) 보호감호제도의 어떤 집행현실이 위헌인가

보호감호제도의 합헌론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보호감호의 취지 혹은 목적과 상치된 감호처분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변정수 재판관이 든 예이기도 함)

첫째, 보호감호의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족 친지나 일반 사회인과의 접촉이 쉽게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송감호소는 일반 수형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위치에 있어서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수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오지에 있어 일반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 가족 친지의 방문도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며 보호감호제도의 원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피감호자들이 받고 있는 근로보상금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급여수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과연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피감호자에게 사회적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감호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근로보상금은 감호기간동안 꼬박 저축한다고 해도 기십만원을 넘지 않는 상황으로 출소 이후 생활정착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노역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응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청송보호소 내에서 피감호자들이 집단으로 단식투쟁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보상금 문제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본인은 사회보호법 혹은 보호감호제도는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위헌적인 법률,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사회보호법 혹은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므로 이 문제의 위헌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헌론자의 논리에 의해서도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논리인 현재의 보호감호의 현실 그 자체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현법소원의 사유)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인은 현재의 보호감호제도의 여러 현실(집행방법)이 하나 하나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장차 이 제도 자체의 폐지도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헌법12원
부당이득

*청송 보호감호소 관련- 이상희 위원

1. 사실관계

청송보호감호소의 권영민(975번)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 특히 상여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2. 법률검토

사회보호법 제42조 :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형법 제39조 :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격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보호감호소 업무처리 지침 :

별첨 자료 참조.

3. 대응 방안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이미 현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므로,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상여금 지급근거 규정인 사회보호법 제42조를 다투어 종국적으로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형자와는 달리, 감호자의 경우 노역이 집행의 한 내용이 아니므로(노역이 집행의 한 내용인 수형자에게 조차 상여금 지급 규정의 위헌성 논란이 있고, 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곳도 있음) 노동에 대한 대가를 국고의 수입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재사회화의 측면에서도 임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대응 방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면서, 전제가 되는 사회보호법 제4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함.

④. 작업상여금 →

- 양도기 - 이발래, 치아복기 - 보호감호소

보호감호소 대화기 21

- 기준은 위헌이다 //

- 시작하기 program - 제작 예산 문제.

社會保護法 廢止에 對한
呼 訴 文

(社會保護法의 違憲·違法性과 合目的性 喪失
및 人權侵害 實態에 對한 報告書)

作成者：趙 錫 曉
青松第2保護監護所 在監
被保護監護者 在監番號 259番

호 소 문

우선,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보도를 통하여 저희 감호자들의 절규(絕叫) 소식을 듣고 말없이 피눈물을 흘렸을 감호자 가족친지·지인(知人) 여러분들께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감호자들의 노력과 절규에 특별히 귀 기울여 주신 기관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600여명의 감호자들이 목숨을 걸고 9일에서 13일간이나 단식으로 절규하고 있음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바른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점과, 저희 감호자들은 죄수(罪囚)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형벌(刑罰)을 받고 있는 수형자(受刑者)로 여겨서 마치 흉악범 죄수(罪囚)들이 난동(亂動)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오해(誤解)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저희 감호자들은 형벌을 받고 있는 죄수가 아닙니다.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빼앗겨 그리운 부모형제와 사랑하는 처자식을 그리며 자유와 새로운 삶을 갈구하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600여명이란 많은 인원이 9일에서 13일간이나 단식으로 악법(惡法)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알리려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울분으로 남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이런 인식과 오해 때문에 감호자는 물론 감호자의 가족친지나 지인(知人)들은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숨죽여 피눈물만 흘릴 뿐 호소 한마디 못하고 있으며,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 대다수 감호자의 갱생(更生)의지가 좌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감호자들은 최선(最善)의 방법을 선택하여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보호법의 위헌(違憲), 위법성(違法性)과 반합목적성(反合目的性),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고자 한 것일 뿐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나 마찰이 없었다는 점과 지금도 최대한 적법(適法)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의사를 외부로 전달할 길이 차단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은폐 또는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과거(過去)의 범죄자였으며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가족친지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각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감호자들은, 새사람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의 자유와 권리·의무를 되찾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자유와 권리·의무는 단순히 저희 감호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친지와 지인,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자유와 권리·의무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자랑스런 우리 조국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나라, 진정한 인권(人權)이 보장되는 나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은 수형자(受刑者:죄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갇혀 있는 곳도 교도소(矯導所)가 아닙니다. 저희 감호자들은 죄의 대가(對價)에 해당하는 형(刑)을 모두 복역(服役)하였으므로 그야말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무가 회복된 완전한 자유의 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보다 더 열악한 중구금(重拘禁)시설에 강제로 구금(拘禁)되어 그리운 부모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처자식도 부양(扶養)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죄수(罪囚)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호감호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을 종료한 자를 보호하여 교육·개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일률적(一律的)으로 7년 동안 보호감호(保護監護)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호감호가 7년 이하의 보호처분으로 재판에서 형이 선고될 때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7년의 보호감호처분 즉 실질적인 징역 3년 내지 6년 11개월을 선고받는 것'이며 모든 감호자의 신분장부에는 보호감호 종료일이 만 7년으로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7년 전에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출소(假出所)일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호감호 종료(終了)일에 만기(滿期)출소하는 감호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호종료일에 나가겠다고 약을 써도 기어코 6년 11개월에 내보냅니다. 이건 또 무슨 억하심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만기 전에 가출소를 시켰다는 명분이 있어야 보호관찰(保護觀察)이라는 또 다른 형벌을 부과(賦課)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

셋째, 저희 감호자들이 2002년 들어 세 차례의 단식농성(斷食籠城)으로 절규한 주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위헌(違憲)·위법성(違法性)과 합목적성(合目的性)을 상실한 점, 인권침해의 실태 등을 외부에 알려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과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자'하는 것이었지 결코 '근로보상금의 인상이나 단순한 가출소(假出所) 확대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출소

감호자는 생각이 지극히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가출소 인원의 확대는 보호감호 청구의 남발 등 오히려 더 큰 보호감호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두 달 가출소 인원이 많아지면 금방 보호감호 자체가 좋아진 것으로 이해해버립니다.

한 달에 가출소 인원수를 20명씩만 늘인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240명 3년이면 720명입니다. 3년이면 감호소 1개소가 없어지고 6, 7년이면 2개소의 감호소가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수백 명의 교도관과 직원, 수백 명의 경비교도대, 2개소의 시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속적인 가출소 인원 확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감호자는 사회적으로 잊혀진 존재인데, 경비교도대는 젊은 국가의 동량이 될 청년들이고 교도관과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감호소는 국가의 시설인데 이런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감호자를 우선하여 가출소 인원을 확대해 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법무부의 가출소 인원 확대라는 시각은 일시적인 기만술에 지나지 않으며 감호자들은 여기에 절대로 혼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개선이란 의미가 없다

고 할 것입니다.

확대란 법무부의 시각이고 저희 감호자들은 가출소의 현실화, 즉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가출소를 실시하여야만 그나마 사회보호법이 합목적성을 갖는다는 취지였지 가출소를 확대시켜 달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넷째, 저희 감호자들의 절규를 듣고 여러 가지 개선(改善) 방안과 사회보호법의 폐지(廢止) 방안이 언론 등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보호감호자(被保護監護者, 이하 '감호자')와 그 관계자, 보호감호소(保護監護所, 이하 '감호소')를 대상으로 한 보호감호의 실태(實態)에 대한 실질적(實質的)이고 명확한 바탕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책이 언급되어야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의한 미봉책(彌縫策)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저희 감호자들이 단식(斷食) 농성을 종료하게 된 것은 우선 600여명의 단식 참가 감호자들의 건강이 염려되었기 때문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지하고 성의(誠意) 있는 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민간인권단체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한겨레 신문' 등 언론의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법무부 책임자가 방문하여 감호자들의 요구와 보호감호의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법무부 보호국의 검사가 우리 감호자의 의견을 듣고 돌아갔고, 미흡하지만 저희들의 의견을 성의껏 전달하였으며, 개인 면담에 통한 소수의 의견을 호도하여 저희 전체 감호자들의 취지를 희석(稀釋)시키거나 호도(糊塗)하지만 않는다면 사회보호법이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호자가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실상이나 합목적성을 상실한 법 집행에 대해 보다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저희 감호자들이 깊이 반성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법무부 보호국의 검사가 무지(無知)한 감호자들을 상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代案) 제시를 바랐다면 그것도 사실은 지나친 기대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감호자들의 문제제기를 성의있게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행정관청이나 입법부, 사법부에서 마련하여야 할 사안이지 저희 감호자가 월가월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설사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들 그것을 과연 수용을 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공부가 부족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당국자의 인식은 아직도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9일 이상 13일이나 집단으로 목숨을 걸고 단식(斷食)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법무부 당국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실상을 알아보려고 감호소를 방문한

관계자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법무부의 시각이 얼마나 안이하고 감호자의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저희 감호자들과의 집단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담당 검사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을 할 수 있는 점이 거의 없다’는 식의 미적지근한 대답은 저희 감호자들을 더욱 절망하게 하고 다시 한번 절규하게 합니다.

저가 부족한 소양(素養)으로 두 달여에 걸쳐 정리하여 작성한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호소문을 국가기관과 언론, 민간인권단체와 종교단체 등 40여 곳에 보냈습니다만 인편(人便)이나 엽서(葉書)로라도 메아리가 있었던 곳은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단 세 곳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 감호자들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올바르고 끊임없는 참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의 절규가 하나하나 ‘담밖의 세상’에 울려퍼지게 될 것이고 이런 절규가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좋은 소리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바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감호자들의 실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고, 이 기대(期待)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순간도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감호자들은 무지(無知)하여 단식농성이 여러 번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밖에는 사회보호법의 위헌·위법성과 법 본래의 목적에 반(反)하여 집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보호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상을 알릴 길이 없으므로 거듭하여 단식농성으로 사회보호법의 잘못된 점을 외부(外部)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던 것이고, 외부에 알려지기만 하면 언론이나 민간인권단체, 관계기관들이 알아서 사회보호법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단식농성이 외부에 많이 알려진 점에 고무(鼓舞)되어 단식 농성을 종료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호소 측에서는 사회보호법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진정서(陳情書)나 청원(請願),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옳습니다. 그러나 감호소 내의 감호자의 실상을 자세히 단 한 번만 들여다 보십시오.

우선은 감호자는 감호소 측에 단 한 번이라도 잘못보이면 당장 가출소에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호소 측의 행정처분이나 사회보호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쉽게 이의나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도소와 달리 감호소는 모든 감호자가 많든 적든 가출소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호자라면 누구나 하루라도 빨

리 가출소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므로 자연히 가출소에 얹매일 수밖에 없고 이런 까닭에 보이지 않는 구속은 오히려 교도소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진정서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며 이의를 제기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동료감호자들에게 절대 불이익은 있을 수 없으니 관계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인권단체에 꾸준히 진정서를 제출 하라고 동료 감호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출소 심사를 앞둔 감호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조차 그런 내용의 편지 한 장 못 보냅니다. 이것이 감호자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이 감호자의 무지함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불복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맙니다. 감호자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감호소 측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떤 불복절차나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무지한 감호자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하거나 감호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여 인도하기는커녕 알고 있는 사실도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못 하도록 암묵리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호자도 소수 있겠지만 소송서류나 소송절차 소송비용 등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2만원 몇 천원 벌어서 소송비용을 15만원이라고 어렵잖으면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감호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합법절차만을 주장한다면 감호소 측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감호자는 어떤 식으로 불복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언론이나 민간인권단체 및 관계기관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디 감호자들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호자들의 절규가 어찌 저희 한 사람의 절규이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피눈물을 속으로 삭이며 자식을 기다리는 늙은 부모와 형제들,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자식과 가장(家長)이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도하는 지어미들의 소리 없는 호소를 저버리지 마시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올바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호법은

1. 법치국가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違背)될 뿐 아니라 형법

(刑法)의 근간(根幹)이 되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불소급(不溯及)의 원칙, 이중처벌(二重處罰) 금지(禁止)의 원칙,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의 금지, 과잉(過剩)형벌 금지의 원칙 등을 어겼고,

2. '형기(刑期)를 종료한 출소자(出所者)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한다'는 법 본래의 목적에 반(反)하여 집행(執行)되고 있어서 법의 효용가치(效用價值)를 상실했으며

3. 직접 사회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감호자(監護者) 뿐만 아니라 그 가족친지와 지인(知人)들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박탈(剝奪)하는 등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반(反)인권적 악법의 표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 실태 등을 밝혀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 다 음 -

이 법은 제5공화국의 삼청교육(三淸敎育)을 모태로 태어난 법이므로 태생적으로 합헌성(合憲性)과 합법성(合法性)을 상실한 법이라는 것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으므로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고, 추후(追後)에 형식적인 합헌성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미 실질적 진실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헌성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 대략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다만 일반인이나 사회보호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야 알 수가 없는 감호소 내(內)의 실태와 이 법의 오·남용 집행실태 등, 이 법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감호자가 보고 느낀 현실속의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가식(假飾) 없이 밝힘으로서 이 법의 인권침해 실상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치국가(法治國家)의 실현(實現)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치국가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적(理念的)인 법치국가뿐만 아니라, 형벌(刑罰)은 위법행위(違法行爲)의 경중(輕重)과 행위자의 부책(負責)에 비례하여 정당하게 행해져야 함은 물론 법적 절차 또한 준수해야 하며 유추해석(類推解釋)에 의한 자의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절차(節次)나 양형(量刑)에 있어서 과잉(過剩)형벌을 금지한다는 것 등의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 어느 누구도 강자(強者) 또는 다수인(多數人)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익(共益) 즉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福利)를 위하여는 목적의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고 필요한 제한의 정도가 '최소(最小)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제한의 방법도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이미 감호자는 위법행위의 부책(負責)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복역을 종료함으로써 사회보호법이 목적하는 공익을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므로 보호감호를 통해 달성할 공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감호는 감호자의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최소의 정도'를 크게 초월하여 수형자보다 더한 단순한 폐쇄증구금(閉鎖重拘禁)으로 '최대(最大)의 정도'이고, 감호자가 제한당하고 있는 기본권도 수형자와 똑같아서 보호감호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감호자가 제한당하고 있는 기본권을 서로 비교하면 감호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현저히 무거워서 너무나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사회보호법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법치국가의 이념(理念)과 실질(實質)에 배치(背馳)되는 악법(惡法)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보호감호는 형벌이 분명합니다.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해 범죄행위의 경중(輕重)에 비례하여 형(刑)을 선고받고 그 형을 종료하였다면, 그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모든 기본권이 분명히 회복되었는데, 감호자는 그 형(刑)을 종료(終了)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헌법 17조), 통신비밀의 보장(헌법18조),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의 보장 및 최저 임금 또는 적정 임금의 보장(헌법32조), 직업 선택의 자유권(헌법23조), 선거권(헌법24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36조) 등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도소보다 더 열악한 중구금(重拘禁) 시설에 구금(拘禁)되어 수형자(受刑者)보다 못한 처우(處遇)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분명히 이러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이 형벌과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가졌으므로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의 모순점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이비 약장사가 어떤 약병에 상표를 '건강보조의약품'이라고 쓴 다음 효능(効能)란에 '건강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고 기재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이 약이 건강 보조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이 약을 제조할 때 제조당사자도 알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면해 보

려는 의도였고 이를 복용해 본 사람도 이 약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 기는 키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지인 등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도 지켜본 결과 이 약이 '건강을 해치는 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품의약청도 이미 이 약품의 성능(性能)이 의심이 되어 여러 번의 실험 결과 이 약이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효능을 명시한 구절에 '건강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고 했으니 이는 '건강 보조 의약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으며 이 결정을 수용할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법에 의해 어떤 제재(制裁)를 가할 때 그 제재가 형벌(刑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1. 과연 그 제재의 실체(實體)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며
2. 그 제재를 가하는 쪽이 그 제재조치를 무엇으로 관리하고 취급하느냐
3. 그 제재를 당하는 쪽이 그 제재조치를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느냐
4. 그리고 일반 대중이 그 제재조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5. 또 문서상 그 제재조치가 무엇으로 다루어지고 있느냐가

형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제재를 가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은 물론 일반대중도 모두 그것이 형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문서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형벌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명문화된 문구상의 '목적' 하나만이 형벌과 다른 목적과 취지를 지녔기 때문에 이는 형벌로 볼 수 없고, 명문화된 법전의 문구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정도(正道)이지 실질적인 진실을 판단하는 것과 헌법재판관이 법률의 위헌·위법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헌법재판관의 오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호감호를 둘러싼 사회보호법의 위헌·위법성 논란의 요지는 과연 보호감호가 형벌이냐 아니냐 였습니다. 만약 보호감호를 형벌로 봐야 타당하다면 이는 분명히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감호가 형벌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는데, 보호감호가 분명히 수형과 마찬가지의, 엄격하게 말하면 징역형(懲役刑)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물리적인 면에서 보호감호는 분명히 형벌입니다.

보호감호소가, 지리적 위치나 시설 면에 있어서 다른 일반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의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로 중무장한 중구금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 금방 확연히 드러나므로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 형벌이냐 아니냐는 사실

재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가) 시설(施設)은 물론이고 시설의 배치(配置)까지도 중구금교도소인 청송교도소와 다른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중 삼중의 철문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각 사동(舍棟)과 작업장의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으며, 계호(戒護)하는 교도관이 없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라고 하더라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나) 거실(居室)에 들어오면 역시 이중(二重)으로 자물쇠를 채운 실평수 2.2평의 마루로 된 공간에서 비닐 창문으로 추위를 가리며 4, 5명의 감호자가 모든 생활 도구와 도서(圖書), 각자의 생활물품과 침구(寢具), 의류(衣類) 등을 정리하고 남은 공간에서 사육(飼育)되는 돼지처럼 북적거리며 생활합니다.

다) 수검(搜檢)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물(私物)과 속옷까지 수시로 뒤져도 항의조차 할 수 없으며 매일 작업을 마치고 거실로 입방할 때는 일일이 몸수색을 하고, 하물며 가족과의 면회를 하기 전(前)에도 반드시 몸수색을 받습니다.

라) 거실에서는 0.27평(120cm × 75cm)의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며 세탁·세면까지 모두 해결해야 하고 아무리 혹한의 겨울이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 냉수로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 법무부의 은전(恩典)이라고 선전하는 TV시청도 좋은 싫든 보여주는 대로만 보아야하고 채널 선택권이란 아예 없으며 신문이고 도서고 허가된 것만 읽을 수 있습니다.

바) 기호식품(嗜好食品)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자비(自費)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비부담 물품'과 '자비부담 의약품' 구입의 선택권도 없습니다. 교도소와 똑같이 지정(指定)해준 물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부담 물품의 경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자비부담물품 구입의 완전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교(比較)선택권이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음식물의 경우는 안 사 먹으면 되지만 생필품은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문제인데 모두 품목이 한 가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별첨3 '자비부담 물품 종류 및 가격표' 참조) 모두 저렴(低廉)한 가격을 우선한 탓인지 구입할 때 당장은 싸게 먹히지만 하나같이 품질이 형편없어서 결국은 감호자의 돈을 낭비하게 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쉽게 버리게 되므로서 절약정신을 해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감호소 내에서 구입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니까 가족친지 또는 지인에게 감호소 바깥에서 구입하여 차입(借入)해 줄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므로서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는 부담이요 감호자에게는 난처한 부탁이 되고 정신적으로는 의타심(依他心)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만 지적해 보면 속옷, 동내의 등을 체질이나(알레르기) 체형을 무시되고 있고, 칫솔은 이빨과 잇몸,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운동화와 양말은 정해진 운동시간에 조깅, 농구 등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감호자들의 운동할 때의 기능성(技能性)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빨과 무릎 등 몸의 피로를 가중(加重)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수명이 일반 스포츠용 양말과 운동화와 비교할 때 너무 형편없이 짧아 세 달을 쟁용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큰 낭비를 부릅니다.

둘째, 재단법인 교정협회 제품의 문제인데, 가격이나 중량의 적정(適正)은 둘째로 치고, 과연 가격만큼의 가치는 고사하고 제품으로서 판매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품질이 의심스러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정협회는 이윤의 극대화(極大化)만을 추구하는 악덕 업주인지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극단적인 이윤 추구만을 추구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종이 장처럼 얇은 '오징어'와 품질은 상관없이 그저 볶기만 한 '땅콩', 그래도 가끔씩 고기 한 점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감호자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듯이 유일한 고기인 '닭훈제'와 감호자들의 부식의 질이 형편없다는 것을 간파하여 거친 닥 종이 같은 '맛김'과 탁한 '참기름', 고춧가루 듬성듬성 섞인 '멸치조림'을 반찬이라고 팝니다.

이것은 교정협회의 감호자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교정협회는 법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는 자신들이 퇴직 후 노후에 돈을 벌려 갈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착취행위에 가까운 독점(獨占) 강매행위를 방지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과일 구매 문제인데, 구매 계약 시점과 반입 시점의 시가(時價) 차이인지 일반적인 신문 등의 고시(告示) 가격과 비교할 때 중량이나 수량에 비해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도 오래된 것이거나 과일로서 맛을 상실한 저급한 과일이 대부분으로 중량만 기준치를 채우는데 급급한 판매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감호자의 돈도 돈입니다.

빼골이 사그리드는 어려운 환경에서 피 같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것으로 일반인보다 더 귀한 돈이면 돈이지 결코 일반인의 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감호자 가족의 돈도 돈입니다. 피땀흘려 모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때 쓰라고 보내준 귀하다 귀한 돈입니다.

이런 귀한 돈을 제대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반드시 길이 있는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물건의 가격과 내용물의 무게와는 맞지 않는 경우일 때 (2003.1.) 같은 소비세는 1kg 100원 정도
여기 가격이 100원인가 그걸 줄이거나 중개상의 압박으로 1kg 100원에서 800원에까지 올랐을
경우 회수는 중개상의 차액 그동안 흡수해서 소비자는 같은 돈에 2배불을 것이다.
따뜻도 갖고 써울 것도 좋을 것이다.
이거 유통을 통한 환경과 개인의 환경의 차이로 흡수하는 약간의 차이를 찾았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품질과 청렴한 여러 종류가 있다.

한국의 철학, 문학, 미술에 대한 글.

특히 온몸을 꽁꽁 묵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은 간단한 접촉사고에도 감호자가 심한 부상을 당할 우려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나 주사를 맞을 때는 물론이고 2시간이 넘는 치과 수술, 잇몸 수술의 경우도 등허리에 주먹 두 개 만한 굵기의 포승줄 매듭 뭉치를 매달고 수술용 의자에 누워 있으면 등짝이 배겨서 아프고, 자기 손으로 물컵을 들어 입안을 헹구어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호송 당시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뚫은 상태 그대로 수술을 받게 합니다.

• 6월 11일(금) 10시 30분 ~ 11시 30분.

• 정부가 1900년 교총회장을 선출, 함께 한개의 초기의 구멍이 솔솔 뚫리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이후에는 솔수도 없고 차단에 영도의 철창과 철문을 설치하여 시장하게 된 되어 있어서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입출을 주제 관에서 흘수로 출입하는 철책)

• 대체로 물론 뿐만 아니라 학제적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 Chit Chat (with the teacher)

• 청탁: 허가증류자와 계약이나 출입국이 허용되는 날짜 09:00 ~ 15:00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 韓國의 門戶 三端의 三端門戶.

사) 몸이 아파서 자비(自費)로 병원에 진찰이나 치료를 받으려 가려해도 응급환자가 아니면 병원으로 나가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건 예사고, 외부 병원에 진찰이나 치료를 위해 호송(護送)할 경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양 손목에 수갑을 두 개씩 채우고 다시 손목과 팔 그리고 허리를 연결하여 완전히 끊은 후에 교도관이 감호자 일인당 2인 이상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하고 계호(戒護)를 합니다. 세상에 환자에게까지 이렇게 삼엄한 계호를 하는데 이것이 어찌 감호자를 수형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계호를 하고 외부 병원에 나가면 외부 사람들이 감호자를 ‘흉악범 죄수’로 보지 어느 누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하고 있는 ‘사회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서신의 검열이나 면회를 할 때 교도관이 참석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수형자와 똑같고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감호자의 대화내용 뿐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내용까지도 일일이 감청(監聽)하므로서 부부간의 내밀(內密)한 대화나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감호자의 사생활의 비밀은 물론 통화하는 상대방의 비밀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하여 감호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상대방의 프라이버사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감호자 뿐 아니라 감호자와 통화를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보호감호 기간 중에 관규를 위반하면 심할 경우 연쇄(連鎖)라고 하여 쇠사슬로 손과 발, 허리를 묶어 독방에 감금하는 경우나 수갑을 채우거나 시승시갑을 하기도 하고 엄중독거(嚴重獨居)를 실시하는 등 차마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진압도 가끔 시도됩니다. 이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문제에서 접근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감호자를 마치 흉악범수형자처럼 다루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보호감호를 형별로 취급·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우리 감호자를 수령자 중에서도 가장 최하(最下) 등급에 속하는 수령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TV시청이나 선풍기 및 난방온돌판넬 설치 등 문화적인 시설이나 생활기반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항상 감호소는 제외되거나 다른 일반교도소에 비해 가장 늦게 설치되는 것을 보더라도 감호소는 실질적으로 교도소 중에도 최하위에 해당하는 중구금교도소로 법무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만약 감호자를 진정으로 재(再)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수용하고 있다면 재사회화(再社會化) 조치나 사회적응력 강화(強化)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이나 문화적 교육을 교도소보다 우선하여 설치하거나 시행하여야 당연하

지 않겠습니까.

나) 또 우리 감호자를 직접 교육교화하고 관리감독, 계호(戒護)하는 일선 직원(교도관, 분류직, 교회직, 의료직, 직업훈련교사, 기술직, 기능직 등을 모두 포함하여)들도 감호자를 모두 수형자 취급하고 있고 감호자들도 죄수 취급을 당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하게 수형자 취급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호소와 청송교도소를 오가며 20년이나 근무한 어떤 6급 교도관은 '감호자는 방안에서 줄을 맞추어 지정된 자리에 정좌를 하고 앉아있어야 하는데 한겨울철에 차가운 마루바닥에 담요를 접어 방석으로 깔고 자유롭게 앉아 있는 것도, TV를 시청하게 하는 것도 모두 국가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도관이 감호자를 두들겨패지 않는 것을 두고 '얼마나 좋아졌느냐'고 감호자에게 되묻습니다. 명색이 6급 공무원이 이 모양인데 달리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청송에 밀집(密集)되어 있는 4개의 수형·감호 시설을 오가며 근무한 지가 십 수년 또는 이십년에 이르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옛날부터 감호소를 포함한 수용 시설은 '함부로 때려잡아도 말 못하는 곳'이었다는 인식이 깊이 뿐리박혀 있는 한 영원히 감호소는 군사정권시절의 '피비린내 나던 흉악범교도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교도소와 감호소를 오가며 근무하게 되어 있는 보호감호 집행의 이원화(二元化)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철저히 교육만 하면 충분히 해소(解消)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점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부에서 감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상대할 때와 똑같은 자세로 근무할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 과연 감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거나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감호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우리 감호자를 죄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은 아무리 우리가 죄수가 아니라고 외쳐봐야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며, 그것이 그나마 올바른 보호감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겨울철에 작업을 마치고 거실에 입방(入房)하여 인원점검이 끝난 후 취침을 하기 전까지 TV 시청 시간에 모포를 깔고 누워서 있거나 이불을 덮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직원들은 깔고 있던 모포 등을 정리하고 바로 앉으라고 합니다. 이는 '수형자 준수사항'을 그대로 베낀 '감호자 준수사항'에 따르라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수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계는 4, 5년 많게는 20년의 세월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엄동설한

에 냉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골병이 들대로 든 감호자들을 휴식시간(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지정된 자리에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감호자 준수사항'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질서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감호 중인 감호자의 성실한 직업훈련과 작업을 위한 휴식으로 인식하여야 할 문제이며, 보안상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 감호자의 건강과 사회복귀 후의 건강한 사회생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귀 촉진과 인권존중의 시각에서 처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감호소에 근무하는 일선 교도관의 의식전환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일시적인 방임(放任)상태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전환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감호소측의 직원은 나이 어린 직원이라도 감호자에게 반말을 하기가 예사입니다. 직원은 감호자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이라기보다는 감호자는 옛날부터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깊이 뿐리박혀 있기 때문이고 신규 직원들조차도 예전의 그런 인식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감호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동들이 예전보다 한결 나아지기는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호자가 행정처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감호자라고 하더라도 반말투의 말이 한 마디라도 섞이면 난리가 납니다. 금방이라도 "감히 도둑놈 주제에"라는 말이 튀어나올 듯한 태세입니다.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앉은자리에서 일어나서 항의를 하면 "앉으라"고 명령하고 만약 항의 과정에서 홍분하여 자리에 앉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요 목소리 큰 것은 '소란'이라고 처벌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작업장에서 거실에 입방하여 출입방복을 벗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탈의를 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탈의는 '감호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호자 준수사항'대로 생활하다고 하면 감호자는 사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보트에 불과하고, '감호자 준수사항'을 규제적인 면으로 확대 해석하여 감호자에게 적용하여 생활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교도관들이 관용을 베푸는 것일 뿐이지 감호자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보호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형자와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도관은 집에 들어가서도 외출복을 입고 생활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무렇게나 반말을 지껄이는 교도관은 감호소 밖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감호자를 수형자와 똑같이 취

급하여 감호자를 수용생활에 만성화 시키는 것이요 감호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법률적인 면으로 넘어가면 감호자가 수형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 사회보호법 42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형(行刑)과 보호감호는 법의 목적이나 취지가 완전히 다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보호감호는 형벌과 완전히 구별되는 목적과 취지를 가졌으므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과연 행형법에 준용하여 사회보호법의 목적과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호자는 모든 것이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처우됩니다.

나) 주·부식 급여에 대한 규칙도 "재소자 주·부식 급여 규칙"을 준용하도록 '피보호 감호자 분류 처우 규칙'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의류 및 침구도 품질이 똑 같을 뿐 아니라 "재소자 의류 및 침구 등 제식 규칙"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동 규칙 제 4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직업훈련의 종목 및 방법 등도 "수용자 직업훈련 규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동 규칙 제77조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 귀휴도 수형자의 '귀휴 시행 규칙' 및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을 따른다고 동 규칙 8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 감호자의 두발(頭髮)은 '수형자 수발(鬚髮) 제도 개선 지침'에 의한다고 동 규칙 5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관리 규칙' 제 10조에는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유류금 처리도 행형법 제43조 2항 또는 3항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우 규칙' 100조에는 아예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형법, 동 시행령,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또는 분류 처우 업무 지침 등 교정 관계 법령 또는 교정 관행(慣行)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호자를 수형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분류·처우하는 것은 물론 수형자를 취급하던 관행(慣行)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작업도 교도소에서 하던 강제노역을 '근로'라고 이름만 바꾸었을 뿐 실질적인 작업내용은 전국의 교도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청송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언급할 것이고

차) 하물며 감호자 준수사항도 '수형자'란 호칭만 '감호자'로 바뀌었을 뿐 수형자

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반교도소의 수형자는 국경일 등에 특별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아 가출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수형자보다 더한 형벌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면이나 특별가석방(가출소)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수사항과 똑 같습니다.

감호자가 수형자와 똑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어쩌면 수형자보다 더 나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수형자와 똑 같거나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형자와 똑 같은 법과 규칙, 관행에 따라 생활하고 수형자와 똑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하면서 “감호자는 수형자가 아니다”라고 하니 국가의 법 집행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지금의 보호감호가 단순한 폐쇄구금이 아닌, 지금의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닌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제시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차치하고, 유럽 형사 규칙 64조에서는 ‘구금형(拘禁刑)은 자유를 박탈함으로서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의 ‘보호감호’는 분명히 ‘형벌(刑罰)’입니다.

4) 감호자는 징역형을 복역할 때와 똑 같은 자격정지를 다시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38조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고 하여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정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와 일첨일획도 다르지 않고, 형법 41조에 ‘자격정지’도 ‘형(刑)’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50조에 ‘자격정지’는 ‘사형(死刑)’, ‘징역(懲役)’, ‘금고(禁錮)’, ‘자격상실(資格喪失)’ 다음가는 형, ‘벌금(罰金)’보다 무거운 형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호자는 보호감호가 청구된 행위시의 사건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병파하여 선고받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으므로서 징역형 기간동안 위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징역형을 종료하고 보호감호가 개시(開始)되므로서 보호감호 중에도 다시 징역형을 복역할 때와 똑 같은 ‘자격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로 두 번의 ‘자격정지’를 받는 것이고 ‘자격정지’도 분명한 형벌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형법 50조에 명시한 형의 경중(輕重)을 보면 자격정지는 ‘금고’, ‘자격상실’ 다음가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호감호’는 ‘자격정지’를 부차적(副次的)으로 동반하는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자격상실’ 이상에 해당하는 형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에 적은 여러 가지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감호자와 함께 생활한

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한 달만 보호감호자와 함께 생활해 보면 시설과 계호, 감독, 의료시설과 의료행위, 직업훈련과 작업 등 모든 면에서 보호감호가 오히려 형벌보다 더 형벌처럼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라고 우기는 저의를 저희 감호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보호감호와 관계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무부의 직무유기이며 사회보호법이 형벌이 아니라고 결정한 현법재판관들이 전과자를 멸시(蔑視) 또는 천시(賤視)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전(前) 번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여러 단체 및 국가 기관에 보낸 호소문에는 보호감호를 비유하여 ‘우유를 사이다병에 담아놓고 사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 역시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보호감호는 누가 보아도 우유가 담긴 우유팩이 분명한데도 ‘우유’라고 쓴 부분을 흰 종이로 가리고 ‘사이다’라고 쓴 다음 사이다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해야 그나마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보호감호는 양형법정주의(量刑法定主義)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형의 양정(量定)은 증명(證明)된 위법행위(違法行爲)와 작량감경(酌量減輕)의 사유를 참작하여 판결에 의해 경중(輕重)을 두는 것이고, 위법행위에 비례하여 판결 선고된 형(刑)만을 복역(服役)하여야 당연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느 누구든 그 이상의 형은 복역할 의무도 없으며 복역하게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재판에 의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오히려 빨리 사회에 복귀(復歸)하게 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형(受刑)생활 중 아무런 잘못이 없고 행형(行刑)성적이 우수한데도 전자(前者)와 비교하여 더 늦게 사회에 복귀하게 하여 양형(量刑)법정주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범인 ‘갑’과 ‘을’이, ‘갑’은 전과(前科)가 있고 ‘을’은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공모(共謀)하여 수 개의 죄를 범하여 검찰로부터 똑같이 보호감호가 청구되었을 경우, 재판에서 ‘갑’은 주범(主犯)이고 전과가 있으므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무기(無期)형을 선고하여 보호감호가 병과(併科)되지 아니하였고,(사회보호법 20조 1항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로써 보호감호의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범(從犯)인 ‘을’은 가볍게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15년형(刑)을 선고하므로서 ‘을’에게만 보호감호가 병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무기형을 복역하다가 15년 수 개월만에 가석방(假釋放)되었습니다.

었고 ‘을’은 15년형을 만기(滿期) 복역하고 난 후 보호감호로 3년, 도합 18년을 복역 아닌 복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어찌 양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면, 두 사람이 똑같이 검찰로부터 ‘사형(死刑)’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구형(求刑)을 받아 한 사람은 ‘무기형(無期刑)’을 선고받고 또 한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무기형 보다는 가벼운 형이 유기형(有期刑)인 20년형인데, 20년형에 보호감호를 병과받으면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징역 20년과 보호감호 6년, 모두 26년을 복역하여야 하고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무리 늦어도 20년 전(前)에는 출소를 합니다. 이럴 경우 더 무거운 죄를 범했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죄를 범했고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년이나 더 늦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어찌 양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호감호는 형벌(刑罰)이 아니라고 억지를 써도 똑같이 보호감호가 청구되었다가 재판장의 재량권과 전혀 상관없이 무기형을 선고받으므로 보호감호가 병과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렇게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유기형인 15년형이나 2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더 늦게 출소를 한데서야 법리를 떠나서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보호감호를 병과받으므로 받는 수형중의 불이익이나 보호관찰(保護觀察) 등의 또 다른 형벌을 생각하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양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보호감호는 과잉형벌(過剩刑罰)이 분명합니다.

경미한 ‘질도’죄나 단순한 ‘폭력’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감호를 병과받았을 경우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보호감호 5년을 복역하고 가출소(假出所)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6년 6개월형’을 복역하는 셈입니다. 가출소 후에 3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뺀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8년 6개월’ 혹은 ‘6년 6개월’이라는 형기(刑期)는 보통 단순 ‘살인(殺人)’이나 ‘상해치사(傷害致死)', ‘폭행치사(暴行致死)' 또는 몇 개의 ‘강도상해(強盜傷害)' 죄를 범하고 선고받는 형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과잉형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실례를 들자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던 단순 폭력 전과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행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가료(加療) 중 병원 수칙을 어긴 문제로 병원관계자와 언쟁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를 받았고 현재 보호감호 4년을 복역하였는데 아직 가출소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

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열심히 생업(生業)에 종사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당사자의 생생(更生)의지나 직업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고 폭력 또한 단순한 순간적인 폭력에 불과한데도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현재 5년 6개월 이상 구금(拘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법전(法典)의 문구(文句)로 보호감호의 타당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과잉형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억지스런 주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무지(單純無智)하기 이를 데 없는 감호자인 단순절도나 단순폭력 전과자(前科者)에게 ‘살인을 하나 도둑질을 하나 7, 8년 감옥에서 살기는 매일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미필적 고의>를 사회보호법이 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감호를 병과(竝科)받은 감호자는 수형 중에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과 청송보호감호소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흉악범교도소’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출소 후 사회인들에게는 다른 일반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흉악범 전과자로 비쳐진다는 점, 출소 후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3년 동안이나 또 다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보호감호(保護監護)는 과잉형벌이 분명하다고 단언(斷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보호감호는 자의적(恣意的)인 판단 금지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징역 20년에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 징역 20년을 복역한 후에도 20년 전(前)과 마찬가지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20년 전에 미리 예단(豫斷)하여 재판한다는 것인데, 20년 후를 예단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찌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에 의한 판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1) 똑같이 보호감호가 청구(請求)되었다가 ‘무기형’을 선고받으므로 보호감호가 병과되지 않은 경우, <죄질이 나쁘고 형(刑)이 무거운 무기수(無期囚)는 20년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예단되는데 <죄질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고 상습성(常習性)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 형이 가벼운 20년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예단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논리와 상식에 맞단 말입니다.

극단적이 예입니다만, 20대의 청년이 40대의 장년이 되어서도 20대 청년시절과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감히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재판부는 사람이 아닌 신이란 말입니다. 신도 앞날을 일일이 예측·예단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2) ‘재범(再犯)의 위험성’이라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적용하여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에도 당연히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가능성 여부를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징역형(懲役刑) 선고 당시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가능성이란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배치(背馳)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단 하루 만에도 새로운 의식(意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감호소 출소자들이나 전과 수십 범의 전과자 중에도 타인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전과자(前科者)라고 해서 미리 미래에 대한 나쁜 결과를 예측하여 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3) 사회보호법 제37조 1항 1의 ‘보호감호는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조항이나 같은 법 제7조 3항의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7년 또는 10년 후의 변화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일 터이고, 사회보호법 제36조 2항에 감호청구의 시효를 15년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적어도 15년 이후(以後)를 예단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분명히 모순(矛盾)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3년 이상의 보호감호 기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4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사람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도 사실상은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나 법의학적, 법리적으로 수용 기간(期間)이 7년을 경과하는 것은 보호감호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회보호법 하의 보호감호 수용기간을 7년이라고 정했다고 할 것인데 징역형도 어차피 똑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교정교화를 위한 생활이므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7년 이상의 수용은 사회보호법에 명시한 수용시설 내에서의 수용기간을 7년 이내로 정한 것과 배치(背馳)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 보호감호는 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보호감호가 실질적으로는 형벌로 집행되고 있으니 이중처벌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비록 재판에 의하지 않더라도 감호자를 죄명에 따라 실질적인 가출소 허가 기간을 4년, 5년, 6년 연차별로 정하여 짐사하고 가출소(假出所)를 시행하는 것은 두 번 처벌하는 것에 다름없으므로 실질적인 진실에 있어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한기택 부장판사는 ‘성매매 대상자 명단 공개만으로도 체면을 깎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보호감호는 체면을 깎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를 지나 중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것이므로 어떤 명분과 논리를 끌어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기’ 항 참조)

바. 보호감호는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可變的)으로 청구되고 선고되었습니다.

일례로 소년범(少年犯)으로 초범임에도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은 감호자나 성년범으로 초범이거나 재범임에도 상습범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감호 중인 감호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중 15년 형을 선고받아 징역형 복역을 종료한 일부 감호자의 경우는 현재 보호감호의 설정대로라면 보호감호 6년 이상 경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기형을 선고받으므로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지 않아 일반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假釋放)된 공범(共犯)과의 형평성(衡平性)을 고려하여 이미 가출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리 개인 사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감호의 모순점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리 상습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범으로 보호감호가 청구되는 경우는 전무(全無)하고 성년범의 경우도 초·재범의 경우는 보호감호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보호감호가 군사정권 시절에는 지나치게 많이 청구되었다가 지금은 그나마 정체(正體)성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회보호법의 존폐여부를 떠나 이런 시대적 희생양이 된 감호자는 우선 구제되어야 하며 사회보호법의 존폐 여부를 떠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시대적 상황에 영합(迎合)해 온 사회보호법은 시대의 아첨꾼에 불과하지 '법(法)'이라고 이름하기도 부끄럽다고 할 것입니다.

사. 치료감호에 비교하여 보호감호는 수형(受刑)기간 동안의 교정교화(矯正教化)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에 대하여 일반 보호감호의 경우 적계는 1년 6개월 많게는 20년 이상의 수형(受刑)기간이 '재범의 위험성'여부를 판단하는 기간과는 무관(無關)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보호법의 현실인데 실질적으로는 수형 중에도 여전히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의 위험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형기간을 교정교화와 무관한 시간 즉, 사회복귀를 촉진하거나 재범의 위험성 해소와는 무관한 공백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수형 중의 교정교화 행정을 감호행정이 부정하는 것이고, 치료감호 기간을 수형 기간에 산입(算入)하도록 한 치료감호와의 형평(衡平)을 고려할 때도 심각하게 형평성을 어기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치료감호의 경우 징역형 복역 기간에 감호기간을 산입하여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신미·박약(心神微·薄弱) 또는 정신질환(精神疾患)에 의한 범죄의 치료감호의 경우도 '재범의 위험성'의 치료기간을 7년 이내로 본다는 의미일 텐데 보호감호의 경우는 수형기간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을 마친 후 보호감호가 개

시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호법 안에서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지난 3월 22일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刑罰)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돼(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감호가 징역형(懲役刑)과 구별되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을 복역(服役)할 때와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와 목적 즉, 징역형을 복역할 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구체적(具體的)이고 명확한 '사회복귀를 촉진(促進)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수형시설보다 우선하여 시행되는 것을 전제(前提)로 하여야 그나마 합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전(法典)에 적힌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文句)만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호감호'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일반교도소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조치도 감호소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호소를 제외한 교도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탁(委託)작업, 외부통근(外部通勤)취업, 개방형(開放型)교도소의 운영,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생활관 운영 등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보다는 적어도 상위(上位)에 속하는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들이어야만 징역형과 구별하여 <실형(實刑)을 종료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도소에서 조차 이미 시행된 지가 십 수 년이 지난 위의 조치들조차도 감호소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란?

전항(前項)에서 예를 든 것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명확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조치'여야 하므로

- 1) 일반사회의 근로환경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활동의 보장
- 2) 근로활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對價)의 저축으로 사회복귀 후 정착 생계자금의

마련 보장

- 3) 가출소 후 곧바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기능 훈련과 숙련의 기회 보장
- 4) 일반사회와 유사(類似)한 환경과 생활 리듬의 보장에 의한 사회 적응 훈련 등과 아울러
- 5) 가장 우선적으로 조속한 가출소와 실질적인 보호관찰(保護觀察)의 활성화를 통하여 감호자가 사회에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감호자의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우 규칙' 67조에 명시된 '외부 종교행사 참석'이나 68조에 명시된 '영화 등의 관람'도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그나마 감호자의 사회적응 훈련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조항들인데 이런 조항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규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도소보다 더 엄격하게 확대 해석하여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회보호법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법이라도 시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는 사문화(死文化)된 법이요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근로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對價)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호자는 '근로동의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호자는 과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입니까? 저희들이 만약 근로자라면 마땅히 근로자로서의 일할 기회와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죄(重罪)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비례하는 형(刑)을 종료하였다면 형을 종료한 날부터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바, 근로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며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술을 익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권을 무시하고 '실형(實刑)을 종료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미명 하에 감호자를 장기간 교도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강제로 구금하여 보호감호를 실시한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근로활동의 보장 뿐 아니라 근로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취득하게 하여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 정착자금(定着資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우 규칙' 제70조 2항에는 '근로는 감호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감호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強制規定)이라고 할 것인데 과연 '종이가방 접기'와 '머리핀 1차 가공', '비닐 위생장갑 세어 담기' 등의 작업이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건강한 청장년이 '종이가방 접기'와 '머리핀 1차 가공', '비닐 위생장갑 세어 담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여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 이를 저축하여 사회복귀 자금으로 삼을 것이니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우 규칙' 제70조 2항에 명시된 대로 근로할 기회를 달라는 감호자의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하고 그렇다면 국가는 감호소 출소자에게 사회복귀 및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감호자들은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 국가 예산으로 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도 우리가 무리하게 국가 예산으로 사회정착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감호자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금하고 있고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익힐 기회도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호소 출소자에게 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감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1) 정상적인 근로활동의 기회조차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호자의 사회정착금이라는 것은 감호자가 보호감호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아 이를 저축하여 사회에 복귀 후 적어도 최저(最低)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생계(生計)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는 감호자가 이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작업을 유치하여 감호자로 하여금 근로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현재 감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근로)은 교도소의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작업을 근로라고 이름만 바꾸고 강제노역이나 다름없는 작업을 시키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작업내용은 전국의 교도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청송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청송교도소는 '페인트 용 봇 제조', '포대가마니 제작', '가방 봉제', '플라스틱 바구니 제작', '손수건 포장', '어망 제작' 등이었는데(1999년 당시)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종이가방 접기' 뿐이고 제2보호감호소는 '종이가방 접기', '머리핀 1차 가공', '위생 비닐장갑 세

어 담기'입니다. 그나마 교도소에서는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작업을 시켰는데, 보호감호는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며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면서 사회에 복귀하여서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 감호소가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위치하여 작업의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평계 인데 감호소가 오지에 위치한 것은 감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는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이행할 마음이 있다면 사회보호법 제7조 2항(감호 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에 명시된 대로 하다 못해 대도시 인근의 수형시설에 위탁 수용을 하더라도 외부 출근 작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그나마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사회보호법의 목적이 조금이나마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우 규칙' 제72조에는 '처우등급 가, 나급의 감호자는 외부 출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있는 감호자는 모두 외부 출장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 감호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외부 출장근로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보호감호가 사회보호법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과 취지와는 반대로 '오로지 잡아 가두어 두는데 급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만큼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과는 무관하게 집행되어 왔다고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동 제75조에는 '개인근로'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호소는 오히려 개인의 가진 기능을 사장시키고 있을 뿐 단 한 사람도 개인근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례로 조리사(調理師)나 목공(木工), 전기용접(電氣鎔接)이나 건축(建築) 분야의 기능을 소유한 사람이나 인장(印章) 기술을 지닌 감호자에게 개인근로를 하게 하므로서 근로보상금의 적립을 용이하게 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관용부(官用部)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시켜서 개인근로를 할 기회를 차단하거나 인장 등의 기능은 오히려 범칙(犯則) 행위로 이용되고 있어서 감호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감호자에게 개인근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인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게을리하여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일반 감호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감호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자금의 마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근로활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반사회의 근로 조건과 흡사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열악한 수용(收容)환경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도소의 세수(稅收)작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근로

법무부나 관계기관,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소의 폐해(弊害)에 관심이 있는 많은 법조인과 학자,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간파하고 있는 것은 감호자가 사회정착 자금이 없이 출소하는 것은 감호자가 예전의 범죄를 반복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재범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호감호 청구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수형, 보호감호 수용생활 등으로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거의 없었던 감호자는 금융기관 신용 불량 경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불법 신용카드 발급 업자들의 유혹이나 가출소자 스스로의 사회정착 생계자금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수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속칭 '카드 징'이라는 불법 신용카드 할인을 통한 위법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역시 같은 방법의 자동차 할부 구입 후 전매(轉賣)나 가전제품 할부 구입 후 전매 등을 통한 위법행위, 도박, 투견 등의 현장에서 기생(寄生)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 일핏 보기에는 보호감호와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속칭 '카드 징'이나 '자동차 · 가전제품 할부 구입 후 전매' 행위 등은 신용불량자를 양하여 설사 감호자가 예전의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착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회적 낙오자가 되게 하여, 결국은 보호감호가 감호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실패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보호는 커녕 사회의 악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감호자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래는 사회적인 경제 여건이 극도로 어렵고,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을 치솟아 물가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최첨단 IT시대와 동떨어져 살았던 감호자를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급격히 변하여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사회로 내몰아 버리는 국가의 책임일 뿐 감호자로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이며 경제력 능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과 대가를 수반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감호소에서 하고 있는 근로 작업은 교도소의 세수작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이가방 접기'와 '머리핀 1차 조립' '위생비닐 장갑 세어 담기' 등 지극히 단순한 노동에 불과한 작업이고 작업환경이나 조건도 극도로 열악할 뿐 아니라 그 대가 또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받는 작업상여금(作業賞與金) 수준을 조금 상회(上迴)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근로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감호자의 사회정착금 마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가는 예산문제와 양노원이나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의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들먹입니다. 그러나, 감호자는 국가에 의해 모든 기본권이 박탈당한 채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로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짜로 사회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정착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일을 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일 뿐인데 이것이 어찌 예산의 문제이고 어찌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논할 문제란 말입니까.

이것은 비단 감호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호자의 부모와 처자식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감호자에게 일을 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 적립에 의한 감호자의 사회정착금 마련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 감호자의 사회정착의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자고 먹고 입는 것(衣·食·住)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올바른 사회정착도 꾀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랜 수용생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야 말로 범죄가 아닌 다른 올바른 사회생활의 방편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담하건데 출소 후에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단 한 두 달이라도 사회에 적응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금이라도 확보된다면 감호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3) 정당한 근로의 대가(對價)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 정당한 근로활동의 대가라 함은 최저 수준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국가에서 보호감호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감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수준으로 적어도 징역형을 복역할 때 강제노역(強制勞役)을 하고 받는 작업상여금과는 현격히 구별이 되는 액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호자가 받는 근로보상금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받는 작업상여금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아래 표1 <감호자의 근로보상금과 수형자의 작업상여금 비교> 참조) 더구나 이 근로보상금을

사용하게 하므로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저축의 면에서 볼 때는 교도소의 작업상여금 수준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감호자의 근로보상금과 수형자의 작업상여금 비교>

수형자의 작업상여금		하		중		상	
		나급	가급	나급	가급	나급	가급
3류	500원	600원	550원	650원	600원	700원	
2류	650원	750원	750원	850원	850원	950원	
1류	1,100원	1,200원	1,600원	2,300원	2,500원	4,000원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7등급 1,100원	6등급 1,400원	5등급 1,900원	4등급 2,400원	3등급 3,200원	2등급 3,900원	1등급 4,800원

나) 작업등급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업장(작업장)에서는 개인별 작업량 능률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작업등급이 낮으면 근로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여 똑 같은 작업능률을 올리고도 하루에 1,100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4,800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모순(矛盾)이 아니겠습니까. 능률에 별 관계없이 보호감호 경과 시간에 따라 승급되는 작업등급을 기준으로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교도소 수형자의 작업상여금 지급 규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보상금도 작업상여금 1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예탁금 상황은,

별첨1 '2002. 10. 31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 근로보상금 예탁금 총액'을 보면 현재 감호자 752명의 근로보상금 총 예탁금은 293,735,398원입니다. 1인당 평균 390,606원의 예탁금을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그나마 1인당 예탁금의 평균액수가 39만원에 달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명과 200만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감호자가 105명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소유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감호자 85명이 전체 감호자의 평균치를 상당히 상향견인(上向牽引)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 사실은 평균치인 390,606원을 밀도는 금액을 소지하고 있는 감호자가 526명으로 전체의 69.94%를 차지하고 있고, 10만원 미만을 소지하고 있는 감호자도 283명(3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283명의 감호자는 출소할 때 10만원 미만의 돈을 손에 들고 출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이 출소 후 사회복귀 및 정착의 기틀

2감호소 감호자는 모두 1감호소에서 적어도 1년 이상 보호감호를 경과한 후 2감호소로 이감(移監)을 왔는데 근로보상금이 단 1원도 없는 감호자도 26명이나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정보기기운용 직업훈련생으로 있으면서 작업등급이 5등급인데 보호감호 2년 8개월에서 3년 7개월까지 일 년 동안 462,650원의 근로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38,554원의 근로보상금을 받은 셈인데, 신문구독, 일용품과 의약품 구입비로 121,850원, 기타 물품 구입비로 154,210원, 외부병원 진료비로 107,810원, 도합 383,870원을 사용하고 78,780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78,780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만 가족으로부터 2002년 한 해 동안만 163만여원의 돈을 송금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일 년에 462,650원을 벌어서 200여만원을 써야 하는 현실이 현재 보호감호의 현실입니다. 저 개인의 경우가 일반적인 감호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보상금의 경우는 일반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은 유독 외부병원 진료비와 소송인지대 등의 지출이 많아서 유일한 가족인 출가한 누나들에게 일일이 도움을 청할 수만은 없었기에 근로보상금을 모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2001년까지만 해도 저도 근로보상금을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고 모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모든 감호자들이 근로보상금을 많이 모아서 사회에 출소 후 새생활을 위한 사회정착 자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보호감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은 액수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데다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보상금의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을 마련할 수 있는 정착금을 마련하는 저축의 면에서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금액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자감호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서 10만원 미만을 소지하고 있는 감호자가 전체 38명 중 22명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57.8%의 여자감호자의 평균치가 35,858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예탁금의 평균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근로보상금을 저축한 예탁금의 총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가)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감호자는 평균 보호감호 3년이 경과하였다고 가정(假定)을 해도 (본인의 직업훈련교장의 경우 평균 보호감호 3년 9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남) 한 달에 1인당 평균 10,850원을 저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회복귀 및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 는 말입니까. 고액의 근로보상금 예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감호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거실에서 TV도 시청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하거나, 또는 새벽에 조출(早出)하여 일을 하는 것은 물론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일하는 쿠사장(炊事場)이나 청소반(清掃班)에서 일하는 감호자로 5년 이상을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만 쓰고 근로보상금은 쓰지 않았거나 아예 근로보상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 고령자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작업등급별 기준량(1.0정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준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근로보상금을 받는 감호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병사(病舍)에서 가료중이거나 독거(獨居)수용으로 출소할 때까지 근로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감호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감호 수용 중에도 가족 또는 독지가(篤志家)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이고, 가족이 있는 감호자의 경우는 많은 적든 모두 가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근로보상금 예탁금이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저축한 근로보상금이 많은 것도 가출소 심사 시 심사사항이라고 교육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출소하고 싶은 감호자는 불고염치(不顧廉恥)하고 가족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용하고 근로보상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감호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점도 전체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예탁금 총액을 그나마 이정도로 유지되게 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실질적인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저축액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것이므로 절대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 또 직업훈련생의 경우는 대부분 작업등급이 하위등급에 속하여 근로보상금을

마) 근로를 하는 작업공장의 경우는 직업훈련장보다 조금 많은 근로보상금을 받기는 합니다만 직업훈련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첨6 '제16공장 근로보상금내역서'를 참고로 살펴보면 2002. 10.에는 1인당 평균 55,212원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고 평균치인 55,000원 미만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 감호자가 전체62명 중 37명으로 59.67%이고 30,000원 미만의 근로보상금을 받는 감호자도 25명으로 40.32%, 작업등급이 4등급 이하인 감호자가 44명으로 7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1인당 평균 56,727원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고 평균치인 56,000원 미만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 감호자가 전체 68명 중 41명으로 62.12%이고 30,000원 미만을 받는 감호자도 30명으로 45.45%, 작업등급이 4등급 이하인 감호자가 50명으로 7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감호소 감호자는 1감호소에서 보호감호를 평균 3년 정도 경과한 후 2감호소로 이감을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형편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10만원 이상의 근로보상금을 받는 감호자는 대부분 보호감호 4,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인데 세상 어디에 4, 5년 일하고 한 달에 10만원 남짓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통한 사회정착금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족친지나 지인, 자매결연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2002. 10. 31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의 정보기기운용 직업훈련 공과의 훈련생의 을 예로 들어보면(별첨2 '10월분 제15공장 근로보상금 내역서' 참조) 현재 29명의 감호자중 작업등급 7등급이 8명(27.6%), 6등급이 9명(31.0%), 5등급이 8명(27.6%)로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29명이 1인당 평균 3년 9개월 이상을 복역하였는데 이 29명의 한달에 받는 근로보상금 총액이 958,720원으로 1인당 한달에 평균 33,059원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초등학생 용돈인들 한 달에 33,000원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이 써야할 일용품과 의료비, 책과 신문, 전화비 등을 모두 자부담(自負擔)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감호자로서는 근로보상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5) 보호감호는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도 못하고, 사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회를 악화시키는 역기능(逆機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작업 유치(留置)를 통한 감호자의 근로활동을 보장하지 못하여 감호자가 실질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감호자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협조 등을 통한 감호자의 사회정착 대책을 마련하여야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책임을 전적으로 감호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감호자를 장기(長期) 구금하여 건강의 악화 또는 약화를 초래하거나 사회와의 장기간 단절로 인하여 사회적 응력을 상실하게 한 다음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사회로 내몰아 먹고살기 위한 생계(生計)형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비관하여 삶 자체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미필적 고의를 범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를 보호한다'는 법 본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저해 또는 방해'하고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유발 또는 유도하여 사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회를 악화'시키는 역기능(逆機能)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근로보상금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호자가 근로보상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하면 적어도 지금의 근로보상금 예탁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만 고추장에 밥 한 번 안 비벼먹고 김치 한 봉지 안 사먹고 수박 한 덩이, 사과 하나 안 사먹고 5, 6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2,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보상금을 모두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일용품 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건, 칫솔, 치약, 세탁비누, 세수비누, 연성세제, 수세미, 고무장

갑, 휴지, 로션, 스킨, 편지지, 봉투, 우표, 볼펜, 노트, 시계와 시계용 건전지, 전화 카드, 운동화, 속옷, 양말, 겨울내의, 침낭, 담요, 기타 동절기 용품, 면도기와 면도 기용 건전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을 감호자가 자부담(自負擔)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기초 일용품은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그 질이 너무나 조잡하고 양이 턱없이 부족하며 공급되는 물품도 휴지, 세수비누, 세탁비누, 속옷, 양말, 칫솔, 치약, 운동화 등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간단한 파스나 연고, 진통제, 소화제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상비의약품도 구입을 해야 하고(별첨5, '자비부담 의약품 혜가 품목 내역서' 참조), 도서의 구입이나 신문 구독, 영양제나 간식, 제철 과일, 우유나 음료, 김치나 참기름, 고추장, 간장, 김 같은 부족한 보충 부식(副食) 등도 가끔은 구입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감호자가 대부분 40대 이후의 연령층인데다가 장기 수용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로 위장(胃腸)질환 또는 소화기(消化器) 질환이나 치료, 안과·치과 진찰과 치료, 관절질환 진찰과 치료 등 많은 의료비 부분에 근로보상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정이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근로보상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작업장에서 5, 6년 동안 작업만 한 사람이 근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한다고 해도 2, 3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런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돈으로 7등급이나 6등급의 겨우 고작 사발면 두 개를, 5등급은 되어야 사발면 세 개를 사먹을 수 있을 뿐인데 모은돈 얼마를 모을 수 있겠으며 200g짜리 훈제 닭고기 한 봉지(약 1/4마리 : 1,850원, 별첨3, '자비부담물품 종류 및 가격표' 참조)를 사먹으려면 7등급이면 이를, 적어도 5등급은 되어야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자 감호자의 경우는 직원식당에 취업하는 것 말고는 아예 작업장이 없는 실정이니 근로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은 실정입니다.

위 2의 라의 3)에서 살펴본 대로 감호자 일인당 평균 예탁금이 39만여원에 지나지 않고 이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출소한다면 출소한 그날부터 당장 칫솔 하나부터 수건 한 장, 속옷 한 벌, 밥 한 끼를 스스로 돈을 주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여유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2, 300만원을 모아 가지고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연고자가 60%에 육박하는 감호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샛방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입을 것을 장만하는 데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평균 이상의 감호자의 경우를 가상(假想)하여 예(例)로 들어 보겠습니다. 장역 형을 종료하고 보호감호소로 5월경에 이송(移送)을 오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부족하므로 적어도 작업이 지정(指定)될 때까지 2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7월에 작업지정이 된 후 12월까지 6개월 정도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등급으로 하루에 1,100원씩 한달에 22일 정도 일을 한다고 계산하면 (토요일은 0.5일로 계산) 대략 한달에 24,200원 6개월에 14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 기준 양(量)을 달성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 후 다음해 1월부터는 가출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능사 자격증을 2종목 취득하여야 하니까 2년간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기간 중에는 근로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작업 등급의 승급(昇級)이 정지(停止)되고 운동·전화·교화상담·종교집회·자매상담·진료 등의 시간이 근로보상금 지급시간에서 공제되므로 한달에 약20일을 근로일수(勤勞日數)로 계산하여 한달에 22,000원 1년에 대략 264,000원을 받습니다.

직업훈련 2종목을 수료하고 작업장에 취업을 하면 작업등급이 보통 8개월에서 11개월에 한 등급씩 승급이 가능하므로 6년에 가출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3년 3개월(39개월:보호감호 기간일 한 달 전에 가출소) 동안, 처음 4개월(직업훈련 전 6개월을 포함하여 10개월에 승급)은 7등급으로 96,800원(1,100원×22일×4개월), 다음 9개월 동안은 한 등급 승급하여 6등급으로 277,200원(1,400원×22일×9개월), 다음 9개월은 또 한 등급이 승급하여 5등급으로 376,200원(1,900원×22일×9개월), 다음 9개월 동안은 또 한 등급 승급하여 4등급으로 475,200원(2,400원×22일×9개월), 다음 8개월 또 한 등급이 승급하여 3등급으로 563,200원(3,200원×22일×8개월)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합하면 6년 동안 2,461,8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 훈련을 두 직종(職種)만 받고 보호감호 6년을 복역하는 경우의 예(例)이고 실질적으로 4, 5개 직종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4, 5년 동안 한달에 22,000원 일년에 약 264,000원 정도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5등급 이하의 근로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저희 직업훈련교장의 현실입니다.(별첨2 '10월분 제15공장(정보기기운용) 근로보상금 내역서' 참조)

또 보호감호 5년에 가출소하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근로보상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며 예로 든 것은 평균 이상을 기준으로 가상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감호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감호자에게 전가(轉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보상금의 사용 용도는 생필품의 구입이나 의료비, 직업훈련 보충교재 구입 등으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감호자에게 전가하는 '국가권력의

국민으로서의 감호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여 감호자가 근로보상금을 과다(過多) 지출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장기 수용생활과 질이 나쁘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식생활로 인하여 발병하는 병이 어찌 위장관계나 소화기 계통의 질병뿐이겠으며, 잇몸질환이나 안과질환 등도 다분히 식생활과 커다란 연관이 있다고 볼 때 아무 죄 없는 감호자를 장기 수용하여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런 질병의 진찰이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호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국가의 감호자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해도 과언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산간오지의 감호소에서 한겨울철에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된 차가운 마루바닥에서의 오랜 수용생활은 중장년의 감호자의 관절 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많은 질환을 초래하게 하여 보호감호 중에도 관절 계통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할 뿐 아니라 출소 후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역시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감호자의 사회정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호감호 중의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감호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량한 침식(寢食)생활에 의한 감호자의 체력저하와 발병은 장래적으로 보아도 감호자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사회생활의 방해 요인이 되면 되었지 촉진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마. 국가는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종료하여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사람을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구금한다면 직업훈련 자체도 징역형을 복역하면서 받는 직업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훈련 환경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직업훈련,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기능(技能)으로서 사회에서 효용가치가 인정되는 직업훈련, 사회에 복귀하여 직업으로 삶을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으므로 사회복귀가 진정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교도소보다도 낙후된 직업훈련 환경과 급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능, 기능으로서 일반사회에서 그 효용가치가 사장(死藏)된 것들만 형식적으로 실시하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1) 현재의 직업훈련은 사장(死藏)된 기능(技能)들입니다.

직업훈련 공과(工科)만 보더라도 얼마나 형식에 치우친 직업훈련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공과는 조적, 타일시공, 건축목공, 양복, 이용, 자동차 정비, 정보기기운용 등인데,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 조적 기능은 콘크리트 패널시공·견출시공, 목조(木造)나 철재(鐵材)·석재(石材) 건물의 일반화로 인하여,

나) 타일시공은 FRP욕조세트, 싱크대세트, 인조석(人造石) 등의 보급과 내장재(內裝材)의 발달로,

다) 건축목공은 알루미늄이나 하이샤시·철재(鐵材) 창호(窓戶)의 발달과, 창호나 일반 목재 건축 재료의 대량 생산의 일반화, 한옥(韓屋) 건축의 급격한 쇠퇴 또는 철재(鐵材) 거푸집의 대량 공급과 시공(施工)으로,

라) 양복제작 기능은 기계화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성 양복의 과다한 공급 등으로,

마) 이용 기능은 미용실 이용의 대중화로,

바) 자동차 정비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신차종이 출시되고 있는데다 엔진의 고장이 거의 없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사) 정보기기운용은 컴퓨터의 대중화와 이미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기능을 익히는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통신 이용이 완전히 차단된 낙후성 등으로,

이미 그 인력수요(人力需要)가 극도로 감소(減少)하여 고도의 기능을 연마하였다 고 하더라도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직종이거나 사장(死藏)된 기능입니다. 정보기기운용 기능사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 30년 전에 교도소에서 실시하던 직업훈련이 대부분으로 일반 교도소와 비교해 보아도 훨씬 시대에 뒤떨어지는 직업훈련입니다.

또한 감호자 대부분이 40대 이후의 연령층으로, 설사 취업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단기간(短期間)의 조잡스러운 직업훈련을 받은 가출소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이며, 직업훈련 마친 후 곧바로 사회에 복귀하여 동일 직종에 종사 할 수 있게 하거나 보호감호 기간 중이라도 동일 직종에 종사하게 하여 그 기능을 숙련(熟練)시키게 하기는커녕 직업훈련이 끝나면 '종이가방 접기' 등 단순노동을 하게 하여 오히려 기능이 쇠퇴(衰退)하여 사회에 복귀 후에는 도저히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보호감호는 징역형과 달리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으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개가 웃을 일이라고 해도 과언(過言)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 자격증 취득시험 합격률이나 취득 수(數)라는 수치(數值)놀음이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시험 합격률이나 자격증 취득 개수(個數) 등 단순한 수치로서 직업훈련의 결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되는가와 직업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취업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성과(成果)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호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야의 취업이 거의 전무(全無)한 현실을 보면 얼마나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물론 감호자의 지식수준이 뒤떨어진다는 점과 수용시설 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 정상적인 직업훈련이 불가능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모두 알고 있던 것인 만큼 감호자의 직업훈련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시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문제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직업훈련 교사나 해당 공무원의 실적(實績)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횡횡하고 직업훈련 교사나 담당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도와주거나 묵인(默認)하는 경우마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감독관이나 시험관들도 이를 공공연히 묵인하고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의 경우 '컨닝페이퍼'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험 중에 담당 직업훈련 교사가 시험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답을 가르쳐 준다거나 시험을 일찍 마친 동료감호자가 해답을 적은 쪽지를 돌리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합니다. 실기(實技)의 경우는 미리 실기를 마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기시험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양복의 경우는 기능공들이 단추구멍이나 바지 아랫단 등의 마무리 바느질을 해 주기도 합니다. 조적이나 타일의 실기시험의 경우는 매년 시험 문제가 몇 가지 유형의 문제 중에서 택일하여 출제되고 있어서(지금까지는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 실기시험 재료 준비 목록과 수량만 보고도 실기시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므로 재료(타일이나 벽돌)의 재단(裁斷)이나 마름질을 미리 하여 숨겨두었다가 시험 당일에 그것을 그대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거의 100%가 이렇게 실기 시험을 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의 실기(實技)시험의 경우는 직업훈련 교사 등이 측정(測定) 결과의 수치(數值) 등을 실기 시험 중인 감호자에게 알려주어서 측정이나 실험을 해보지 않더라도 해답을 쉽게 알 수 있고, 정보기기운용의 경우는 해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데이터베이스, 팔호봉기, 인터넷검색)는 잘 하는 사람이 해답을 찾아서 쪽지에 적어 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워드프로세서의 경우는 아예 정답 플로피 디스켓을 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정고시나 독학학위취득 시험의 경우도 위에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가능사 자격증 2종목을

취득하면 완화 대상자가 되어 일찍 출소할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일찍 출소하고 싶은 감호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격증과 검정고시 합격증을 취득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업훈련이나 검정고시,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성과(成果)를 오로지 합격률로만 따지므로 담당 직업훈련교사나 직원의 업무실적과 곧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담당 교사나 직원이 확인(默認) 내지는 동조(同調)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 또 시험 감독관이나 시험관으로 참석하는 사람들과 직업훈련교사, 담당 직원 등이 대부분 감호자들을 동정(同情)의 시선으로 보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직업훈련의 경우 (조적, 미장, 타일, 건축목공, 양복제작, 이용, 자동차정비 등) 시험 감독관이나 시험관(명칭은 확실치 않음)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수용시설(교도소나 소년원)이나 일부 학교 등 한정(限定)되어 있어서 직업훈련 교사들이 서로 돌아가며 감독관이나 시험관(명칭은 확실치 않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므로 서로의 입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도 시험이 엄정(嚴正)하게 치러지지 못하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마) 이런 문제는 단순한 자격증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범죄자에게 국가가 부정행위를 가르치고 투인하는 꼴이니,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가책(呵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시험관이나 감독관을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사회에 출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가책(呵責)을 느끼지 않게 하므로 재범률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교육과 교화에 의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감호에도 크게 역행(逆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진정으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는 감호자는 오히려 ‘반동분자’ 취급을 받는 것이 지금 감호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저희 감호자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입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동료 감호자들의 가출소를 가로막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이고, 감호소뿐만 아니고 일반교도소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진정한 교정교화, 진정으로 범법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보호감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몰매를 맞을 각오로 말씀을 드렸으며, 앞으로 진정으로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이라면 몰매가 아니라 더한 것을 맞더라도 진실을 밝힐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은 영웅심(英雄心)의 발로(發露)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갑호자들에게 이를

을 얻은들 사회에 복귀하여 오점(汚點)만 더 부각시키는 꼴인데 무슨 공명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감호자의 치부(恥部)를 과감히 드러내더라도 사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글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수형, 수양 생활동안 옛날의 과오를 씻어내려고 부단히 공부한 결과이며 이런 생각과 행동이 제 자신 뿐 아니라 전체 감호자들을 진정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감호소 가출소자로부터 감호소 내의 직업훈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후 이런 문제점들이 감호자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감호자 대부분이 그런 문제는 외부에 드러내지 말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그런 보도가 있은 후 치러진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도 응시자가 컨닝용 자료를 검색하여 답안을 기재하는 것을 감독관(혹은 시험관 인지 명칭은 명확하지 않음)이 바로 옆에 서서 공연히 보고만 있을 뿐 형식적인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감호소의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부정이 뿐리 깊은지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합니다만 시험관 또는 감독관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감호자들이 한달에 2, 3만원씩 받은 근로보상금으로 산 과일이나 오징어, 땅콩 등을 먹으면서 시험 자체는 그저 형식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담당 시험관이나 감독관은 분명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발뺌을 할 것이고, 감호자의 합격을 위해서 한 짓이라고 할 것인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시험이 진정으로 감호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눈가림으로 자격증만 취득하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호자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특히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나 독학학위취득시험 등에서는 이런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열심히 일하면서 주경야독(晝耕夜讀)한 많은 일반인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관중인 시험 답안이나 워드프로세서 답안 디스크, 정보기기운용의 경우는 시험문제를 조사해 보면 금방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실제로 구구단을 다 못 외워서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이나 알파벳을 26자 정도를 겨우 외우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예도 흔하며, 이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그저 국민윤리 한 과목이나 암기과목 한 두 과목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전과목을 공부하여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두 명이 불과하거나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있던 일이니 이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는 제가 직접 검정고시나 독학학위취득시험에 응시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독학학위취득시험 준비반(초등, 중등, 고등 검정반과 함께 있음)에서 수험준비를 하면서 듣고 본 일이며 실제로 부정행위를 할 생각으로 과목을 나누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답안지를 확인하면 당장 드러날 일이니 말로 다짐을 둘 것도 없습니다.

3) 직업훈련은 감호자를 기만(欺瞞)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도 실상은 감호소가 지리적으로 오지(奥地)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비용(物流費用) 부담 등 지나친 생산와 경비의 지출을 거리는 사업자들로부터 작업의 유치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감호자를 기만(欺瞞)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며 설사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진정으로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옆에서 일일이 살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업훈련 교사의 수당이나 근로보상금, 기반시설과 기초설비에 투자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직업훈련 도구나 재료에 소요(所要)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예산을 한 번만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 과자 값에도 못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감호자의 노동력을 낭비시키는 것이요, 사회에서 생업의 수단으로 전혀 소용이 없는 직업훈련을 형식적으로 시키는데 불과하므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절대 약자인 감호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감호자를 노예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 직업훈련과 연계된 작업의 실시나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 개소의 감호소에는 비롯 사장된 기능이긴 하지만 건축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공과가 건축목공, 전기설비, 보일러설비, 배관설비, 조직, 타일시공 등 여러 공과에 이르고 있어서 하나의 종합훈련장을 상설(常設)하여 그곳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감호자를 선별하여 매년 한 동(棟)의 건물을 직접 설비(設備)하게 한다든지,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감호자를 상대로 4개 시설의 직원들의 자동차를 경정비(輕整備)하게 한다든지, 이용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감호자에게 일정기간

감호자의 이발을 의무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든지, 양복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기능 사자격증을 취득한 감호자에게 감호복을 제작하여 영구 지급하여 물자도 절약하고 기능도 익히게 한다든지, 비록 감호소가 오지라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감호자의 실질적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직업훈련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약하나마 이런 조치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험실시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일류기술의 습득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 보조공이라도 좋으니 적어도 직업으로서 삼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 근로를 시켜야 사회에 복귀하여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직업훈련을 잘 받아도 사회에서 직업으로 접합(接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업훈련으로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生業)으로서의 효용가치 창출에 있다고 할 때 감호소의 직업훈련과 근로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전면적으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훈련을 마친 다음 지속적인 기능의 숙련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직업훈련은 실질적으로 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호자에게 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技能)으로 전혀 소용가치가 없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으면서, 자격증을 2종목 이상 취득해야 가출소 심사 시(時) 완화(緩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교육을 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가출소하고 싶은 감호자는 그나마 근로보상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로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작업등급의 승급이 가능한 작업장에서 일할 기회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직업훈련 중에 있는 감호자에게는 근로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작업등급의 승급을 동결시킬 뿐 아니라 체력유지를 위해 모든 감호자에게 허락된 운동시간, 목욕시간, 전화 통화시간, 진료 및 치료시간, 종교집회 참석 시간이나 허락된 종교위원·자매 결연자와의 상담시간 등 교회에 소요되는 시간마저도 일일이 근로보상금 지급 산정 시간에서 공제하는 등 국가가 감호자에게 해 주어야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감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논리를 적용하여 결국에는 그나마 근로보상금 적립을 통한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방해 또는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가출소 심사에 적용하는 자격증 취득 종목 수(數)에 보호감호와 병파된 장역 형을 복역하면서 취득한 자격증은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호감호 중에 취득한 형을 무조건 자격증 취득 종목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아무리 고도

의 기능·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감호소 내에서 익힌 기능·기술이 아니면 사회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어서 사회복귀나 정착에 소용이 없다는 취지인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 죄명에 따라 가출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가출소 심사를 할 때 죄명에 따라 강력범은 강화(強化)대상자로 감호 초범은 5년, 재범은 6년, 절도 초범은 4년, 재범은 5년, 이렇게 정해진 규정에 따라 1차 가출소 심사 대상을 결정하고 완화(緩和)대상자는 그 완화 규정에 따라 가출소 심사를 1년 또는 6개월 앞당겨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이중처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출소 심사는 보호감호 개시 1년이 경과하면 사회보호법에 명시한 대로 매년마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법무부에 앉아서 서류로만 심사하던 것을 조사공무원이나 조사공무원 보조가 직접 감호소를 방문하여 조사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가출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출소 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면밀하고 실질적인 상담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감호소를 직접 찾아온다고 해도 "죄명이 강도네요.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되는지 알지요?"라는 식의 심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감호자가 감호개시 1년 후부터 누구나 똑같이 가출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회보호법 제25조1항의 규정은 죄명이나 죄질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1년마다 '재범의 위험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여 가출소를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죄명이나 죄질에 따라 이미 가출소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면 1년마다 담당공무원이 감호소를 방문하여 일인당 한 달 동안 심도(深度)있게 심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명이나 죄질로 가출소 심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같은 죄명, 같은 형기, 비슷한 죄질의 경우 가출소에 차별을 두면 형평(衡平)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감호자의 항의나 불확실한 우려를 의식하여 법대로 가출소 심사를 못하고 있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감호자가 가출소 심사에 대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회보호법은 왜 폐지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회보호법은 왜 폐지시키지 않습니다.

1) 죄명이나 죄질은 형벌의 기준일 뿐이지 보호감호와는 무관합니다.

이 법의 근본 목적이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사회보호'라고 한다면 조속한 가출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호관찰을 지금의 규제적인 제도에서 진정

한 사회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活性化)하므로서 감호자의 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가출소를 심사함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은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형벌의 기준이 되었던 죄명을 기준으로 가출소 시기(時期)를 획일적으로 미리 정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벌이 분명하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출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죄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5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난 후에 객관적으로 재범을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죄명이 '강도'였기 때문에 6년이 경과해야 가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무슨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출소를 허락하는 것인 말이며 이것이 무슨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호감호란 말입니다.

2) 가출소 기준은 항상 일관성(一貫性)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출소 심사 기준이 일정한 원칙 하에 일관(一貫)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여론이나 중요한 국가 행사(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총선, 대선 등) 등을 이유로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감호자의 인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국가 권력의 횡포입니다. 작년에는 4년에 가출소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올해는 사회적인 사정으로 5년이 경과해야 가출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감호자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작년의 가출소자는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고 올해의 해당자는 3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고 5년이 경과하여야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리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3) 감호소 출소자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나 국가의 책임을 현재 감호소에 수용중인 감호자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감호자의 가출소를 규제 또는 축소시키는 예를 흔히 볼 수 있고, 법무부 당국자도 감호소 출소자의 유명인사 집 강도 사건과 46%의 재범률을 빌미로 감호소의 가출소를 억제하고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사람의 감호소 출소자의 강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1600여명의 감호자에게 전가(轉嫁)하는 것이요 46%의 재범자의 책임을 54%의 재범을 하지 않는 감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명의 감호소 출소자의 범행 대상이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힘없는 감호자가 져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보호감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감호자가 져야 한다는 뜻인지 법무부 당국자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호소 출소자의 재범률이 46%를 웃돌고 있다는 것은 장기(長期) 수용으로 인

한 사회적응력 상실과 수용증후군(收容症候群), 사회정착자금 및 정착 대책 부재 등 보호감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찌 현재(現在) 감호소에 수용중인 감호자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5년 이내의 감호자의 재범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호감호의 실패를 극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이 책임을 면할래야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현재 감호소에 수용중인 감호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설사 5년 이내의 재범률이 80%라고 하더라도 20%의 재범하지 않을 감호자는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조기(早期)에 사회복귀를 시켜야 마땅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회적응력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인 보호감호 초기(初期)에 일찍 가출소를 시켰더라면 사회적응도 빠르고 재범률도 현저히 감소할텐데 보호감호 기간을 연장(延長)하여 가출소를 억제시키므로써 감호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도와줄 연고(緣故)가 모두 끊어지고 감호자의 사회적응력도 나날이 감소하여 결국은 가출소의 억제가 재범률의 상승을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출소자의 재범률 상승이 가출소 억제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을 올바르게 실시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현재 수용 중인 모든 감호자에게 전가하는 공권력의 횡포요, 감호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극단적인 예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감호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강제로 구금하고 있다면 반드시 감호자에게 어떻게 해야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는지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감호자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감호자에게 뿐 아니라 감호자의 가족이나 일반 국민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와 재범의 위험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교육하고 이에 따라 가출소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적어도 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재범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현재 가출소 심사의 모순점을 지적하자면 사회보호법의 근본 목적이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가출소를 심사하는 기준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이어야 하는데, 가출소 요청(要請) 심사를 할 때 이미 가출소를 했다가 다시 재범하여 구속되어 가출소가 취소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출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은 가출소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타당한데도

가출소 후 재범(再犯)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출소를 허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可觀)인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출소자의 재범률이나 유명인사 집 강도사건을 빌미로 가출소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가출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1, 2년 내에 모두 가출소시키고 재범(再犯)을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엄격히 보호감호를 실시하여야 그나마 사회보호법의 취지가 살 텐데 오히려 재범하여 가출소가 취소된 사람을 다시 빨리 가출소시키려고 안달을 부리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올바른 가출소 심사란 말입니까.

5) 보호감호는 죄명·죄질과 상관없이 공평해야 합니다.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감호자를 형벌의 기준이 되었던 '죄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복귀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우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호감호가 보호감호 청구 당시 형벌의 원인이 된 사건의 죄명이나 죄질(罪質)과는 상관없이 모든 감호자에게 동일하게 7년을 처분하도록 사회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호감호가 '죄명'이나 '죄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감호자에게 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便宜) 또는 여타의 이유로 감호자를 죄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죄명이나 죄질에 따라 차별처우를 하거나 가출소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회보호법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득이 죄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통계수치의 파악이나 자료의 작성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류에만 죄명에 따른 구분을 활용하여야 하고 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당연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죄명에 따라 가출소의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면 이는 법리와 상식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6) 보호감호는 교정행정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복역하면서 교정·교화되어 '개선급 A급'에 '행형성적 1급'의 모범수(개선가능자)로 판단이 되어 '당장 사회에 내보내도 사회에 올바르게 복귀 정착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석방 1순위자'였다가 감호소로 이감(移監)을 오는 순간에 '개선급 C급'으로 분류되어 '가출소 불가(不可)'에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개선극난자(改善極難者: 개선 가능성이 낮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교도소의 교정·교화 행정은 과거의 행정이고 지금부터는 보호감호라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징역을 복역하기 전(前)의 과거의 전과(前科)전력은 그대로 존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감호를 복역해야 하고, 바로 직전의 교도소에서의 교정·교화된 당사자와 교정행정의 결과는 없어진

다는 논리인즉 이를 어찌 올바른 논리라 할 것이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교정행정의 실패를 전제로 보호감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상식이요 수용하는 국민이 인정할 때 그 취지가 산다'고 했으며, 재(再)사회화를 도모하는 사회보호법이라면 현재의 모습을 중시해야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을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상식마저도 무시하는 법 집행이 어찌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방관 내지 방치하는 것은 법조인과 해당 행정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보호감호는 감호자의 반(反)사회화를 부추깁니다.

또한 현재의 보호감호 제도는 수용의 장기화(長期化)로 인하여 환경이나 생활 리듬이 수용생활에 만성화(慢性化)되게 하여 가출소 후에는 수용증후군(收容症候群)으로 사회생활 불능자(不能者)가 될 우려를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감호소 가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재범률(再犯率)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용생활의 장기화는 물과 전기, 시설물(施設物) 등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므로써 기초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의식과 에너지 절약정신의 결여를 초래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부를 뿐 아니라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물들게 하며, 질이 떨어지는 주부식(主副食)을 제공하여 결국 제대로 먹지 않고 버리게 하는 것은 절약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이 몸에 배기 하므로서 현대 인류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역행하는 생활습관에 길들여지게 합니다. 또한 조잡한 관급(官給)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므로서 역시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절약정신을 해치는 등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생활습관에 길들게 하는 것은 물론 생활리듬이 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출·퇴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게 일을 시작하고 일찍 일을 끝마치는 반(反)사회화와, 식생활과 주거생활의 반(反)사회화에 물들게 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응력 저하(低下)가 감호자가 가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업연한 현실입니다.

자. 여자 감호자를 상대로 한 보호감호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자 감호자의 경우는 교도관의 취사(炊事)를 담당하는 직원식당 외에는 작업장이 전무(全無)합니다. 그나마 2003년도에는 미용공과 직업훈련 과정이 신설되어 5명의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여자감호자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들

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근로보상금 적립을 통한 가출소 후 생계대책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감호자의 실상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세한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 신상필벌에 의한 가출소 심사가 만능(萬能)은 아닙니다.

감호소 생활 중의 신상필벌(信賞必罰)에 입각한 가출소의 허가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가출소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감호소에서 상을 받는 감호자나 벌을 받는 감호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신상필벌에 의한 가출소 심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감호자의 근본적인 생각에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벌을 받은 사람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생활 중에도 '가출소 직권(職權) 심사', '가출소 요청(要請) 심사'와 작업장·관용부 출역이나 직업훈련 신청, 귀휴, 합동접견, 자치활동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상을 받은 사람은 그럼 왜 상을 받은 만큼의 이익을 주지 않느냐는 항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한 번 벌을 받은 사람에게 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출소심사나 처우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상을 받은 사람도 상을 받은 만큼의 이익을 줘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감호기간동안 관규를 준수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느껴서 희망이 되고 다른 감호자의 모범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감호자에게 간생의지를 고양(高揚)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지 무조건 상과 벌을 가출소 심사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상을 받은 감호자는 상을 받은 만큼 우선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상필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감호소에서 어떤 종류의 상이든 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감호자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을 다른 감호자보다 상대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나 속칭 말끼나 하는 사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작업장이나 직업훈련교장에서 작업지도하거나 봉사원인 경우에 받는 작업표창이 시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여건에 있는 감호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감호자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바 일을 성실히 하고 있고, 정말 간생하여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또는 수용생활의 구조 상 시장과는 거리가 먼 여건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므로 신상필벌이 가출소 심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3. 이 법은 당사자인 감호자는 물론이고 감호자의 가족친지와 지인들의 인권까지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것입니다.

가. 일반국민은 보호감호소를 흉악법을 수형하는 중구금(重拘禁)교도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보호감호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감호소는 이미 국민에게 사회보호시설이 아닌 흉악법을 수용하는 중구금(重拘禁)교도소라는 잘못된 인식이 깊이 뿐리박혀 있고 실제로도 중구금교도소와 진배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감호소를 출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으로 감호소 출소자라는 사실이 쉽게 알려져 감호소 출소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타 교도소 출소자와는 현격히 차별되게 국민으로부터 경원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그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군사정권시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그릇된 선전 탓이기도 하지만 그 후로도 국가는 치속적으로 감호소를 흉악법교도소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왔으며, 국민들의 그런 인식에 의한 피해를 결국은 감호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청송감호소를 사회보호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감호자의 가족들까지도 보호감호를 하나의 형벌로만 여기고 있지 '이유 없는 강제 구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과 감호소의 폐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국가는 국민의 이런 정서 운운하는데 이는 감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언론의 책임입니다.

흉악무도한 살인 범죄자가 일반 수형자에게 많습니까. 감호자에게 많습니까. 조직폭력배가 일반 수형자에게 많습니까. 감호자에게 많습니까. 감호소가 흉악법 교도소라는 인식은 그야말로 국가와 언론의 호도에 불과합니다.

3) 물론 감호소에도 과거에 '흉악법'이라고 지칭되어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을 종료한 감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이미 '흉악법'의 대가에 해당하는 형(刑)의 복역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감호소에는 절도 등 단순사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신박약(心神薄弱)' 또는 '심신미약(心神微弱)'에 가까운 감호자가 50%에 육박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의 정도에도 못 미치는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치나 통계로 드러난 학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학력이 대부분 수형시설이나 감호소 등에서 비정상적인 교육과 방법에 의해 취득된 학력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감호자의 직업훈련생 선발시험의 문제 수준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인데 이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추는 감호자가 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나 (그것도 대부분 부정행위를 해서), 감호자 중에서는 지적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정보기기운용 직업훈련생이 1년의 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도 AND 와 OR의 구별을 못하는 감호자가 과반수에 이를 정도라는 사실이 감호자의 지적 수준을 잘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 4) 이런 감호자들을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상습 범죄자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범죄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 생계형 범죄거나 무지와 심신 미·박약에 의한 범죄, 음주나 습벽에 의한 단순 범죄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차료를 검토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5) 현대의 국민정서라는 것은 결국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고 보안장비나 보안업체의 호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각자가 이미 서로 상대를 잠재적인 범죄 인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감호소를 국민들에게 흉악범교도소로 호도시켜 놓고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평계로 사호보호법과 감호소의 폐지 논의를 주저하는 것은 사법부, 입법부와 그리고 관계국가기관은 물론 언론과 민간인권단체 모두의 비겁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감호자 가족친지나 지인(知人)들의 인권침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호자의 부모형제나 처와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호자의 선후배나 지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감호자를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호자의 가족친지나 지인은 감호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웃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차마 하소연은 못하지만 그 인권침해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1) 감호자가 감호소에 있을 동안에는 감호소로부터의 편지나 감호소로 면회를 가는 일도 감호자의 가족친지 지인들에게는 이웃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환경조사나 신원보증도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취업보증은 가족친지나 지인 중에 사업자(事業者)가 없는 경우는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의 보이지 않는 모욕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용(無用)한 일임에도 말입니다.

또 일반 교도소에서 온 편지는 여러 가지로 평계라도 가능하지만 청송감호소에서 온 편지는 평계는 고사하고 꼼짝없이 '흉악한 범죄자'의 가족이 되어버려서 이웃

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2) 죄 없는 자식이, 형제가, 남편이 감호자란 이름으로 강제로 구금되어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못하고 절해고도(絕海孤島)의 감옥(감호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 면회라도 자주 가야 가출소 심사에 이득이 된다고 하니 머나먼 길을 30분 면회를 하려고 하루를 달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3) 또 감호자가 가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은 이웃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마음아프지만 혹시나 그로인해 가출소자가 가정을 뛰쳐나가거나 않을까, 경찰이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마음을 줄여야 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없이 강제로 구금된 감호자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당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며 이것이 모두 언론과 국가의 호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심각성이 더하고 국가와 언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호감호는 감호자와 감호자의 가족친지 지인 사이에 반목(反目)을 조장합니다.

감호자의 가출소 심사를 위해 환경(環境)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감호자 가족친지 또는 지인에게 보호관찰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화조사를 통하여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가출소 이후에 보호관찰이라는 명분으로 방문조사나 소환조사를 할 때 받게 될 불이익이나 관할 경찰서의 주시(注視)와 이웃의 눈총을 두려워하여 감호자와 감호자의 가족친지와 지인 사이에 반목(反目)하게 되고 감호자의 가출소가 오히려 반감지 않은 일이 될 우려를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어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 감호소 가출소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나 인권 유린이 극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감호자가 가출소 하여 신원보증이나 취업보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전무(全無)하다시피 하여 신원보증이나 취업보증이 감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정착과는 전혀 무관(無關)한 일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가출소를 위해서 환경조사와 함께 신원보증서와 취업보증서를 필수적인 구비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호자는 이미 40대 이후의 연령층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연고자(無緣故者)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연고자의 경우는 부득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이 전과자(前科者)인 감호자임을 밝히고 신원보증과 취업보증 및 환경조사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비밀'을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가출소자의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이나 취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모멸을 감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이 흉악범교도소로 인식하고 있는 감호소 가출소자라는 것이 완전히 노출되므로 인해 억울하게 의심을 받을 여지가 많으므로 행동의 제약(制約)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보증을 해주었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등 많은 부분 감호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출소 중인 보호관찰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 어느 수준까지는 응할 수밖에 없고 '가출소 취소'를 우려하여 쉽게 항의나 이의 제기를 못하게 되므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가출소자가 불만을 속으로 억누르겠지만 그런 불만이 쌓여 급기야는 한순간에 폭발하여 큰 범죄를 유발시키거나 결국 견디다 못해 취업장을 이탈하여 범죄로 빠져들게 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의탁할 곳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는 생생보호소나 기타 종교단체나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수용시설로 감호소·가출소자임을 밝히고 수용을 자원(自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는 또 다른 수용 즉 또 다른 구금이 되어 4종처벌이 되고 맙니다.

마. 보호감호는 가정을 파괴하고 잠재적으로 범죄의 온상역할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
보호감호가 극악무도(極惡無道)한 흉악범을 처벌하는 형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는 깊이 박혀 있어서 구속 당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 보호감호를 병과 받으므로 인하여 감호자의 처(妻)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좌절감과, 징역형을 복역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대적인 무력감과 장기간의 보호감호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중압감 등으로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여 탈선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감호자의 자녀들은 부모인 감호자의 장기(長期) 구금과 감호자의 자식이라는 낙인(烙印)으로 인하여 비관하여 탈선(脫線)하는 경우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경우 또한 이후 에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은 죄의 형벌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복역을 종료하였다면 가정으로 돌아
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와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
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권리를 국가가 빼앗아버린 것이며, 부모의 양육을
받을 자녀들의 권리를 국가가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자녀들의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어린 자녀를 장

차 나쁜 길로 빠지게 할 우려를 상당 부분 안고 있으므로 한사람의 감호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당장 탈선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호자의 자녀들이 부모인 감호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장차 탈선의 길로 빠질 현저한 우려를 안고 있다면 이는 사회보호법이 사회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잠정적인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감호소 출소자의 재(再)사회화 실패는 감호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감호자가 가출소하여 처(妻)가 가출(家出)하고 자녀가 탈선으로 치달아 풍비박산(風飛雹散)이 난 가정으로, 혹은 무연고자의 경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회로 갑자기 돌아간다고 한들 장기 구금생활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의 무일푼인 감호자가 무슨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실을 견디다 못해 다시 범죄의 나락에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을 어찌 감호자 당사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가족이 모두 감호자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들 무능력한 감호자가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40대 이후의 감호자가 가출소하여 부모의 신세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집에 더부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더부살이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출소자는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출소자는 결국 또 다른 전과자(前科者)의 수용시설인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다시 수용생활을 시작하거나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감호소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 감호자는 수형(受刑) 중에도 다른 수형자(受刑者)와 비교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병과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복역하는 동안은 수형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병과받은 감호자는 징역형을 복역하면서도 다른 수형자들이 일반적으로는 누리는 수형자로서 보장된 권리 자체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 정예(精銳)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영등포교도소 등에서 수형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정예(精銳)직업훈련에는 수형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고 정예직업훈련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보호감호를 병과받은 감호자에게는 수형중에도 이런 정예직업훈련에 지원

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기능경기 대회 등에 출전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 기능경기 대회 등에 출전할 기회가 있을 때도 수험자는 누구나 지방 또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의 기회 등 좀 더 우수한 기술을 연마하고, 갈고 닦은 기능을 인정받아 가출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보호감호를 병과 받은 감호자는 수험생활 중에도 이런 기회가 전혀 혀락되지 않으므로 수험자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능에 도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3) 가석방(假釋放)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3) 가석방(假釋放)의 혜택이 전혀 없었구나.
행형(行刑)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는 가석방(假釋放)의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인데 보호감호를 병과받은 수형자는 아무리 행형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어서 다른 일반 수형자에 비해 현격한 차별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수형자의 경우 이런 예가 많은데 일반 교도소에서는 비록 수 개의 죄를 범하여 10년 이상의 장기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초·재벌의 경우는 수형생활 중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거의 가석방의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호감호를 병과 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한 감호자의 경우는 설사 초범이고 행형성적이 아주 우수한 초(超)우량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단 하루도 가석방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차별처우라 할 것이며 수형자로서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전(前) '1의 나' 항에서 예로 든 무기형(無期刑)과 15년형(刑)의 공범관계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듯하다.

4)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행형(行刑)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4)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행형(行刑)의 혜택을 선여 돋자 그림 11
일반 수형자의 경우는 행형성적이 우수하거나 출소를 앞둔 사람들을 선별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외부(外部) 출근 작업이나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생활관에서의 생활, 개방형 교도소에서의 사회 직접 체험 등 그야말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에서의 생활로 사회복귀 자금의 적립과 함께 사회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수형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보장되어 있는데 보호감호를 병과받은 수형자에게는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수형자로서의 기본권이 여실히 침해받고 있는 경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 침해받고 있는 경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역형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기간 중에도 이런 사회복귀 및 적응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교도소보다 더 중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감호자의 기본권 찬탈이 극에 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회보호법은 경찰·검찰 수사에 악용될 여지가 많고 현실적으로도 피의자(被疑者)의 수사에 상당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 보호감호는 협박이나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의자(被疑者)의 수사에는 보호감호를 청구한다는 말 한 마디가 어떤 물리적(物理的)인 고문(拷問)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를 경험한 감호자들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과가 많은 주범(主犯)과 전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범(從犯)의 관계의 경우나, 전과 관계가 비슷한 공범(共犯) 간에는 검찰의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보호감호를 청구하겠다'거나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공범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자백하라'는 협박이나 희유에 못 이겨 자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자백의 강요'이고, 보호감호가 검찰의 피의자 수사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가 과연 공정하게 법에 따라 청구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이므로 이런 차원에서도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에 협조하였다거나 순순히 자백하였다고 반대급부 차원에서 보호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 패션죄로 보호감호가 청구되는 예도 있습니다.

순순히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을 하지 않고 범행 사실에 대해 일부라도 부인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방법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폐不起诉에 해당하여 보호감호가 청구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번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파의 개수나 범행 수법(手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호감호가 청구되어야 할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고 순순히 자백한다는 이유로 보호감호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겸찰이 스스로 자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의 두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중인 수령자 중에서 보호감호가 청구될 만한
데도 불구하고 보호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수령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에 악용되어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할 요소가 많은 사회보호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사회보호법 폐지야 말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은 사실 빙산(冰山)의 일각(一角)에 불과합니다. 감호소 내(內)의 실